

일련번호	1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미부과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 가액¹⁾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1)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가액으로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토지” 는 개별공시지가를 “주택” 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산정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입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에 따르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고, [표 1]과 같이 과징금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1. 부동산평가액 기준 과징금 부과율		2.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5억원 이하	5%	1년 이하	5%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	1년 초과 2년 이하	10%
30억원 초과	15%	2년 초과	15%

자료: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별표] 재구성

따라서 가과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자의 명의신탁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20××. ××. ×.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표 2]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 통보(이하 “해당 사건”이라 한다)를 받았고, 당시 부동산실명법 담당자였던 A 주무관(이하 “A”이라 한다)은 해당 사건이 재판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법원 판결 확정 이후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처리계획을 수립²⁾하였다.

2) 동두천시 가과-▲(20××. ××. ××.)호

[표 2]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 및 (예상)과징금 산출내역 : “생략”

이후 20××. ×. ×. 인사발령 시 A은 후임자 B 주무관(이하 “B” 이라 한다)에게 온나라시스템 업무인계를 통해 해당 사건의 미결 상태를 명확히 인계하였다.

그러나 B은 부동산실명법 담당자로서 1년간 근무(20××. ×. ×.~20××. ××. ××.)를 하고 나서 20××. ×. ×. 인사발령 시 후임자 C 주무관(이하 “C” 이라 한다)에게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부동산실명법 관련 업무인계를 하였지만, 해당 사건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이로 인해 20××. ×. ×.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후임자들³⁾은 해당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해당사건은 아무런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었고, 20××. ×.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의 지방세입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인사발령 과정에서 해당 사건 관련한 업무인계가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B는 온나라시스템을 통한 업무인계와 컴퓨터 파일로 후임자에게 해당 사건을 명확히 업무인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가 온나라시스템에 등록한 업무인계서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B가 사용하던 컴퓨터 바탕화면의 인수인계 폴더⁴⁾에서 20××. ××. ××. B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한글파일이 1건이 확인되었지만, 이 파일 역시 해당 사건과 관련된

3) C 주무관(20××. ×.~20××. ×.), D 주무관(20××. ×.~20××. ×.), E 주무관(20××. ×.~20××. ×.), F 주무관(20××. ×.~현재)

4) B이 업무인계 과정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한글파일이 저장된 폴더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인수인계 폴더에서 확인된 또 다른 한글파일은 해당 사건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는 A이 온나라시스템 업무인계서에 첨부했던 파일을 20××. ×. ×. 단순히 다운로드한 것에 불과하다.

B는 확인서(관련자) 의견 제시 후, 별도 제출한 경위서에서 해당 사건 관련 업무인계를 위해 “파일을 만들었다” 고 두 차례나 진술하고 있지만 이런 B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B의 후임자 C은 B으로부터 해당 사건 관련 업무인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B이 해당 사건 관련 업무인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지적확정측량 관련 업무처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⁵⁾에 신고하여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 제5호 및 제16호에 따르면 농어촌정비사업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

5)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제18호)

발사업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있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등을 포함하며,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관광농원사업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가과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부서로부터 사업승인 신청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을 경우,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완료 전에는 지적확정측량⁶⁾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가과는 [표]와 같이 다과의 “관광농원 개발사업”과 라소의 “개간사업”에 대한 협의의견을 회신하면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 및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이라는 내용을 누락한 채 협의의견을 회신하였다.

[표]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지적확정측량 누락 등 업무처리 내역: “생략”

이에 따라 다과, 라소 및 사업시행자들은 해당사업이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 및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사업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준공하였다.

그 결과 토지 등록의 정확성과 관리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표]와 같이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업무협의를 하면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 및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이라는 내용의 협의 의견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공간정보관리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함(공간정보관리법 제2조 4의2)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등 추진 시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 및 “지적확정측량” 등 관련 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추징	재정상 조치금액	59,100,29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는 납세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 적격요건의 충족 여부, 감면 목적대로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사후관리를 통하여 확인하고, 납세자가 감면요건을 상실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의료법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관련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12. 29. 법률 제198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⁷⁾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7) 현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법률 제20632호, 2024.12.31. 일부개정)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1]과 같이 의료법인 ○○○○○이 의료업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도 감면한 취득세 등 2,167,40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않았다.

[표 1] 의료법인 취득세 감면 및 추징 내역 : “생략”

3.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관련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이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2]와 같이 주식회사 ○○가 신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감면한 취득세 등 14,725,55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않았다.

[표 2]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및 추징 내역 : “생략”

4. 창업중소기업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관련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2항 제1호 및 제7항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⁸⁾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 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은 이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증여 등을 하였다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

8)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법률 제20632호, 2024.12.31. 일부개정)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3]과 같이 ○○○가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였는데도 감면한 취득세 등 32,042,71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않았다.

[표 3]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및 추징 내역 : “생략”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후관리 관련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⁹⁾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¹⁰⁾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함)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¹¹⁾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1호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호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제3호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11) 현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법률 제20632호, 2024.12.31. 일부개정)

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31조의3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 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재산세를 경감받은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면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¹²⁾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4]와 같이 ○○○ 등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여 재산세를 경감 받은 후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말소하였는데도 말소 후 감면한 재산세 등 2,072,580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표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추징 내역 : “생략”

6.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관련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¹³⁾까지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1호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31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5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11호(중전의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의 경우는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 추징제외 대상이므로 임대주택 말소 후 감면된 재산세만을 추징가능

13) 현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분리되었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법률 제20632호, 2024.12.31. 일부개정)

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에 해당 임대주택을 매각하였다면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5]와 같이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해당 공동주택의 일부 호실을 매각하였는데도 면제된 취득세 등 8,092,05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않았다.

[표 5]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 내역 : “생략”

그 결과, 가과는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감면 요건을 상실하였는데도 [표 6]과 같이 취득세 등 59,100,29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6] 지방세 감면 및 추징대상 내역(총괄) : “생략”

7.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동두천시 가과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상기 대상에 대해서 누락세액을 추징하고, 향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아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적격요건과 목적에 맞는 직접 사용 등 사후관리에 대한 검토를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등 59,100,29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
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득세 감면 및 사후관리 업
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추징	재정상 조치금액	61,821,52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주택 취득세 사후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는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누락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 관련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르면 농지 외의 것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은 1천분의 40(이하 “표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¹⁴⁾의 100분의 40을 합한 세율(12%)을 적용(이하 “법인 중과세율”이라 한다)하며, 법인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4) “중과기준세율”이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별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19호)

해당하는 주택은 증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법인이 농지 외의 것을 유상으로 취득하면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면 해당 취득물건 중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해서는 법인 증과세율(12%)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1]과 같이 주식회사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이 포함된 건물을 취득하면서 주택 부분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과소 신고·납부한 세액과 주택 부분에 법인 증과세율(12%)을 적용한 정당 세액과의 차액인 취득세 등 22,124,2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1] 법인 주택 증과 부과대상 내역 : “생략”

3. 개인의 주택 취득 증과 관련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3%(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¹⁵⁾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15) 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 '21. 8. 30.
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일(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 '22. 9. 26.

나무의 세율(4%)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¹⁶⁾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8%)(이하 “2주택자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2주택자 중과세율에서 제외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2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으로 2주택자 중과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1~3%)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내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지 못하였다면 2주택자 중과세율(8%)을 적용한 후 부족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2]과 같이 ○○○ 등이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1~3%)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내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지 못하였는데 당초 일반세율(1~3%)을 적용하여 과소 신고·납부한 세액과 2주택자 중과세율(8%)을 적용한 정당 세액과의 차액인 취득세 등 39,697,2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16) “중과기준세율”이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별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지방세법 제6조 19호)

않았다.

[표 2] 1세대 2주택자 중과 부과대상 내역 : “생략”

그 결과 가과는 납세자가 법인 주택 중과세율 대상임에도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만 납부하거나, 2주택자 중과세율 대상자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만 납부하였는데도 [표 3]과 같이 취득세 등 61,821,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주택 취득세 부과대상 내역(총괄) :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동두천시 가과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부동산 취득 신고시 납세자에 따른 중과적용여부 및 중과가 유예된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과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부과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지방세법」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등 61,821,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득세 부과·징수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5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추징	재정상 조치금액	17,134,41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취득세 부과·징수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누락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취득세 농지세율 적용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농지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기본통칙 지법11-21-1 규정에 따르면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 둔 경우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면 당해 토지가 취득 당시 공부상 농지이면서 사실상 농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1]과 같이 ○○○ 등이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농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일반세율을 적용한 정당 세액과의 차액인 취득세 등 1,369,2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1] 농지세율 부동산 취득세 부과대상 내역 : “생략”

3. 취득세 과세예고 자료 관리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③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정하는 경우, ⑤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에 대한 결정을 진행한 후 과세여부를 결정하고,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여 그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2]와 같이 ○○○○○○○○ 등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취득세 등 12,606,2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2] 취득세 과세예고 부과대상 내역 : “생략”

4.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사후관리 관련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납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세를 부과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3]과 같이 ○○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세를 부과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였는데도 취득세 등 3,158,8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3] 기부채납용 부동산 취득세 부과대상 내역 : “생략”

그 결과 가과는 납세자가 취득세 농지세율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고, 기부채납용 부동산을 비과세 적용 받은 후 타인에게 매각하였는데도 [표 4]와 같이 취득세 등 17,134,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4] 취득세 부과대상 내역(총괄) : “생략”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동두천시 가과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농지취득 신고물건에 대한 항공사진 확인 및 현지 출장, 과세예고자료의 주기적인 정비 및 미부과 자료에 대한 검토, 부동산 비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하여 과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부과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지방세법」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 등 17,134,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득세 부과·징수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6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등 4개 부서 (마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변상금 미부과 등 공유재산 관리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 다과, 라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마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 나과, 다과, 라과(이하 “가과 등 4개 부서”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사용허가 및 승인,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유재산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등 관계 법령¹⁷⁾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등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은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 등 관계 법령¹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

17) 「도로법」 제61조 :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8) 「도로법」 제72조 제1항 :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44조 제2항(대장과 실태조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9조 제3항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주위 환경, 이용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고,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두천시 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소관 공유재산에 시설물 설치, 경작, 물건적치 등을 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두천시 재산관리관인 가과 등 4개 부서는 감사기간(2020. 4. 1. ~ 2025. 11. 6.)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표 1]과 같이 5회 실시¹⁹⁾하였으나 평균 조사대상 건수 5,768건 중 무단점유 조치건수가 평균 1.8건(0.03%)에 불과하는 등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표 2]와 같이 ○○개 필지의 공유재산이 점유자에 의해 경작, 물건적치, 가건물 설치 등 무단점유되고 있음에도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현황 : “생략”

[표 2]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변상금 추정액 : “생략”

19) 2025년 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는 2025년 4월~10월에 실시되었으나 아직 결과보고가 완료되지 않아 제외함

또한, 가과는 공유재산을 매각 전에 해당 공유재산이 사용허가 또는 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된 경우, 매각 후에는 그 점유자 및 점유기간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공유재산이 사용허가 또는 점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점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후 매각을 진행하여야 하나 ○○○○○○-0번지 등 ○개 필지에 대해 이를 누락하고 매각한 것이 [표 3]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 3] 공유재산 매각 시 변상금 누락 내역 : “생략”

그 결과 29필지가 감사일 현재 점유되고 있음에도 17,892,510원(추정금액)의 변상금이 부과·징수되지 않았고 ○필지에 대하여는 변상금이 부과·징수되지 않고 매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동두천시 가과 등 4개 부서는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고, 향후 관계 법령·조례 등을 면밀히 숙지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주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7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 (다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기관경고 및 통보

제 목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다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 나과²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대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동두천시 가과는 공유재산법 제16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2.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가.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부적정 등

1)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유재산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입찰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나 허가의

20) 2025. 1. 1. 조직개편으로 라과에서 마과 및 나과로 과 분할 및 명칭 변경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유재산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5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공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법 제16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공유재산심의회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과는 사용허가 대상자가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한 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해주어야 하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입찰로 사용허가하고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용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24조 및 다른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사용료 감면을 해서는 안 되며, 감면 근거가 있는 경우 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 등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나과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대상에 ○○○○○○ 및 ○○○○가(이하 “○○○○○○ 등” 이라고 한다)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입찰을 통해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며, 공유재산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5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사용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과는 ○○○○○○ 등이 공유재산법 제24조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²¹⁾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표 1]과 같이 ○○○○○○ 등에 대하여 201○. 12. ○○.부터 감사일 현재(2025. 11. 6., 이하 생략)까지 수의의 방법으로 ○○회에 걸쳐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이 중 ○회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부터 사용을 하게 하였고, 총 276,223천 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받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감면 전 공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건에 대하여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행정재산 수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감면 내역 : “생략”

나. 일반재산 대부 및 대부료 감면 부적정 등

1)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유재산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1)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란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2024 공유재산 업무편람 120-121쪽 및 회계제도과-4268, 2016. 8. 16.)

(예시 : 「청소년기본법」 제57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대부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공유재산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5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5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공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제16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공유재산심의회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대부 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한 후 수의계약으로 대부 해주어야 하며,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입찰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대부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34조 및 다른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대부료 감면을 해서는 안 되며, 감면 근거가 있는 경우 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 등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

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입찰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5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대부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데도 [표 2]와 같이 2010. 11. 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회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가과는 ○○○○○○○○○, ○○○○○○○가 공유재산법 제34조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규정 대상²²⁾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표 2]와 같이 2012. 11. 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38,388천 원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받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료 감면 전 공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8건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일반재산 대부 및 대부료 감면 내역 : “생략”

다. 소결

그 결과 나과, 가과는 [표 3]과 같이 최초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시점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수의의 대상이 아닌 자에게 총 ○○회 수의로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이행하지 않고 314,611천 원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해 주었으며, 특히 나과는 ○○○○○○ 등에게 ○건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기 전부터 사용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공유재산 부적정 수의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 등 내역(총괄) : “생략”

22)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란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2024 공유재산 업무편람 120-121쪽 및 회계제도과-4268, 2016. 8. 16.)

(예시 : 「청소년기본법」 제57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3.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가. 관계기관 의견

동두천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및 대부료·사용료 감면 등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채 부적정하게 진행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앞으로 공유재산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도록 추진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관련부서 의견 및 검토결과

나과는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미흡했던 것을 인정하면서, 이는 공공체육 활성화와 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과 및 바과는 최초 가과-00000(0000. 00. 00.)호 “○○○○○○○○ 관리·운영 계획” 상 ○○○○○○○○ 및 ○○○○○○○○○(현 ○○○○○○○○)의 수의계약 대부 근거에는 적시되지 않았으나, 해당 공유재산(○○○○○○○○)에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동두천시의 중요 보안 시설인 ‘○○○○○○○○’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의 대부계약이 가능한 재산인 것으로 사료되어 이 부분을 참작하여 주시기를 희망하며 향후 법령 등을 면밀히 숙지하여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①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②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③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④공유재

산의 지분, ⑤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⑥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으로 되어 있으나, ‘○○○○○○○○’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해당 공유재산(○○○○○○○○)은 1~3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서 면적 별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지역상품판매장, CCTV통제실, 사무실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현재에도 ○○○○○○, ○○○○, ○○○○○○○○○, ○○○○○○ 등이 나누어진 면적에 대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 공유재산의 일부 면적에 위치하였다고 하여 공유재산 건물 전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 이라고 보아 건물 전체의 각 면적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위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수의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한 사실 등에 대하여 「경기도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하오니,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수의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 부적정한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이 있는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전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8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등 ○개부서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특허 보유자와의 1인 수의계약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다과, 라과, 마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 및 다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부서로서 “■■■■■■■■■■ ■■■■ ■■■■ ■■■(■■■)-■■■■■■■■■■” (이하 “■■■■■■■■■■”라 한다) 및 “★★★★ ★★ ★★★★★ ★★ ★★” (이하 “★★★★”이라 한다) 물품 구매 계약을 의뢰하였고, 동두천시 다과 및 라과는 계약부서로서 ■■■■■■■■■■ 및 ★★★★★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

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등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동두천시 일상감사²³⁾ 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의 계약(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수의계약은 제외함)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집행부서²⁴⁾의 장이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부서인 가과, 다과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인지 확인하고, 계약부서의 장에게 수의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 등에 대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부서인 라과, 마과는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의뢰가 접수 된 경우 해당 계약 건이 수의계약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일상감사 등의 계약 사전절차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 구입 사업부서인 가과는 △△△△△△△ △ △△△△ △△을 위해 △△△ △△ △△ △△ △ △△△를 △△하여 △△에게 △△해 주는 △△△ △△ △△△△△을 설치하고자 “■■■■■■■■■■” 물품 구매 계약을 추진하면서 일상감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계약부서인 라과에 해당 물품의 대체·대용품 유무 등을 검토하지 않고 특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조달청 벤처나라²⁵⁾ 화면만을 첨부하여 (주)▲▲▲▲를 계약상대자로 지정하여 계약의뢰 하였고 [표 1]과 같이 계약 체결 되도록 하였다.

23) 일상감사란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함(「동두천시 일상감사 규정」)
24) 사업부서를 말함
25) 벤처·창업기업의 제품을 구매 촉진하고자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며, 벤처나라에 등재되었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은 불가함

■■ 또는 ★★★★★을 구매했으며, 나라장터 혁신장터³⁰⁾에 유사한 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등 해당 물품들은 경쟁이 가능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 및 ★★★★★ 대체·대용품 현황 “생략”

그 결과 일반입찰을 실시하였다면 경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 가과 및 라과

가과 및 라과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다과 및 마과

다과는 당시 사업 추진 일정이 촉박하였고 타제품은 기능·성능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주)▼▼의 제품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사업 목적상 (주)▼▼의 제품 선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향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과는 사업부서가 작성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와 특허증만을 근거로 대체품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특허 보유자와의 1인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한 아래 관련자를 「동두천시 적극행

☆. ☆☆. 입찰을 통해 (주)●●●●●●(대표자: ●●●)으로부터 ■■■■ ■■■■■■■■■■ ○대를 〇〇〇,〇〇〇천 원에 체결(낙찰률 〇〇.〇〇%)
3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제품을 구매촉진하고자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임

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9	감사자	☆급 〇〇〇		공 개(〇) 비공개(〇)
신분상 조치인원	〇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임의적 분할 통한 분리발주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 □□□□□□ 용역을 추진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절-5.라.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단일 용역에 대하여 1인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구조별로 분할하면 아니 되고 일괄로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과는 ●●●● 내 ●●●●●●●●(●●)에 대한 ●●● ●●을 ●●하고자 ☆☆☆☆. ☆. ☆☆. “●●●●(●●) ●●●(●●) ●●●●●● ●● ●● ●● ●●”을 수립하였는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종 시설물로 구분된 ●●●●을 총 ○○,○○○천 원에 상·하반기에 각 ○회씩 ●●●● ●●하는 사업내용을 확정하면서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 용역량을 ●●●●와 ●●으로 분할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분할하여 각 용역 모두 (주)▲▲▲▲▲(대표자: ▲▲▲)를 계약상대자로 지정하여 분리발주하고 [표]와 같이 계약체결 되도록 하였다.

[표] ☆☆☆☆년 □□□ □□□□(□□) □□□□□□ 용역 분리발주 현황 “생략”

그 결과 관련 법령상 1인 수의계약 대상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주)▲▲▲▲▲와 1인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는 ●● ●●의 ●●을 위한 ●●이고, ●●은 ●●의 ●●을 위한 각각의 ●●로 판단하여 분리발주하였고, 매년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 절

감을 위해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향후에는 관련 법에 따라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여 만전에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와 ●●은 ●●의 ●●●로 ●●●● ●●●●●● 용역과 ●●의 ●●●●●● 용역의 방법이 ●●●● 방법으로 동일하고 사업목적 및 과업지시서 또한 동일하며 타 기관의 경우 통합하여 발주한 점, 수의계약으로 예산 절감을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고 예산 절감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임의적 분할을 통해 분리발주를 부적정하게 한 아래 관련자를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0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등 ○개 부서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협상에의한계약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다과, 라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상에의한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동두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운영하고 있고, 동두천시 구 마과³¹⁾, 구 바과³²⁾, 라과는 낙찰자 결정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안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추진하였다.

2.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업무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31) ☆☆☆☆. ☆☆. ☆☆. 조직개편으로 마과의 ●●●● 및 ●●●● 업무가 라과로 업무 이관

32) ☆☆☆☆. ☆☆. ☆☆. 조직개편으로 바과가 나과로 명칭 변경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 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이하 “협상에의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공급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계약담당자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7장-제4절-1.나., 제7장-제4절-1.-다., 제7장-제4절-1.-바.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가위원 선정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는 2021. 9. 13.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주의사항 통보(회계제도과-3858)” 공문을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부규정 등으로 평가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경우 위원수에 관계없이 위원회가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평가위원이 7인 미만인 경우에도 위원회가 개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평가위원 최소인원수(7인) 미만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내부규정으로 평가위원 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하였다.

따라서 가과는 내부규정으로 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평가위원 인원 수를 낙찰자 결정기준과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부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부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내부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포함해서는 아니되며, 평가위원 선정시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 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로부터 추천 받은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평가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가 참석한 때에 개최할 수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2021. 9. 15.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858(2021. 9. 13.) 공문을 동두천시에 전달·통보(경기도 회계과-30156)하였고, 동두천시 가과는 ☆☆☆☆. ☆. ☆☆. ☆☆: ☆☆에 해당 공문을 접수하였는데 감사일 현재(☆☆☆☆. ☆☆. ☆.)까지도 평가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동두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 제1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마과 등 ○개 부서는 [표 1]과 같이 “☆☆☆☆년 동두천시 □□□ □□□□ □□ 용역” 등 ○건에 대해 협상에의한계약을 추진하면서 ○건에 대해서는 내부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였고,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후보명단중에서 임의로 평가위원을 선정하였으며, ○건 전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이 7인 미만인 경우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평가하였다.

[표 1]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업무 소홀 현황 “생략”

그 결과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협상에의한계약 정량적 평가 업무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

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협상에의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제3절-2.-라.-4), 제7장-제4절-4.-다., 제7장-[별표 1]에 따르면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입찰가격 평가로 나누고, 계약담당자는 [표 2]와 같이 각 분야별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정하여 제안요청서³³⁾에 명시하여야 하는데,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표 2]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기준 “생략”

따라서 사업부서는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제안서의 분야별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정할 때,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정량적 평가분야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마과, 바과는 [표 3]과 같이 “☆☆☆☆년 동두천시 □□□ □ □□□□ □□ 용역” 등 ○건에 대해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방법 등을 정하면서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을 정량적 평가분야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하게 설정하여 제안서 정량적 평가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정량적 평가 업무 소홀 현황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 가과

경기도 회계과-30156(2021. 9. 15.)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33)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제안요청서란 협상에의한계약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함

주의사항 통보” 공문 접수자인 ◇◇◇는 ☆☆☆☆. ☆월 계약관리팀에 발령을 받아 업무 숙지가 되지 아니하여 공람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담당자인 ◆◆◆은 공문을 인지하지 못해 지금까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동두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5조 제1항 내용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바과

바과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향후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마과, 라과

마과 및 라과는 산림청의 ☆☆☆☆년 ~ ☆☆☆☆년 ●●●● 운영 사업 지침³⁴⁾ 및 ●●●● 운영사업 지침³⁵⁾에 따라 추진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낙찰자 결정기준과 산림청의 사업 지침 간 기준 차이로 인해 실무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산림청의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고³⁶⁾, 지방계약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등에 대해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이 정당하므로 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4) ●●●● 운영 사업 지침(산림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억 미만 사업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5인이상으로 둘 수 있고, 평가위원은 내부공무원을 포함한 평가위원 후보 명단 중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음

35) ●●●● 운영 사업 지침(산림청)에 따르면 정량적 평가항목 중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이 정량적 평가분야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36)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행정규칙이 아니라면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지침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고, 산림청 지침은 별도의 지방계약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지침도 아닐뿐더러 지방계약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음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2항, 3항' 과 관련하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라며,
- ('2항' 과 관련하여) 「동두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1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적격심사 서류 제출 안내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찰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3절-4.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게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입찰자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별지의 [별표]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현황” 과 같이 총 ○○개의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입찰참가자가 있는 ○○건의 적격심사건에 대해 해당 입찰참가자들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데도 입찰참가자들의 자가평가 결과 적격심사 점수가 미달된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개의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입찰참가자의 재고 부족과 수급 문제 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사유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사유가 아님에도 ○개의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 결과 입찰참가자에게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하여야 할 발주기관이 오히려 입찰참가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하여 포기서만을 제출하게 하였고, 그로인해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여 포기각서 수령과 별개로 입찰참가자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향후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안내하여 적격심사를 필수화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 부정당업자 처분을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동일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심사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지]

[별표]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현황 “생략”

일련번호	12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징계·훈계요구 및 통보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절차 위반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징계대상자	① 가과 □급 A ② 가과 □급 B
징계종류	①~② 경징계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는 ○○ 등 가과단체를 관리하고, □□센터 2층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절차 위반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은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회는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센터 2층 사무실에 대해 사용허가³⁷⁾ 시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규정에 제시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을 문서로 제출받고 사용허가를 한 날 이후에 ○○이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공유재산인 □□센터 2층의 분임재산관리관³⁸⁾으로서 [표 1]과 같이 20\$\$.\$\$. \$\$.\$\$.부터 20\$\$.\$\$. \$\$.\$\$.까지 5년간 ○○에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였다.

[표 1] □□센터 2층 사무실 사용허가 내역 : “생략”

가과는 20\$\$.\$\$. \$\$.\$\$.에 개최되는 □□센터 개관식에 2층이 비어 있을 경우 관리인력 부족으로 민원이 많아질 것을 우려했기에 ○○에서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사무실을 □□센터 2층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다.

반면, ○○은 기존 ■■회관 지하³⁹⁾에 더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는 등 이사시기를 늦추기를 희망하였으나 가과의 요청에 의해 이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은 [표 2]와 같이 20\$\$.\$\$. \$\$.\$\$.부터 □□센터 2층 사무실 사용을 시작하였다.

[표 2]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신청·접수·허가 내역 : “생략”

37)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이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님(출처: 행정안전부 2024년 공유재산업무편람 79쪽)

38) 「△△센터 및 □□센터 건립사업」관련 총괄 및 층별 유지관리부서 지정(20\$\$.\$\$. \$\$.\$\$. (다과-\$\$\$\$)호)에 □□센터 2층 소관부서가 가과로 명시됨. B 나담장과 C 가과장이 협조 결재하는 등 나담이 □□센터 2층 담당부서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39) ○○은 기존의 ■■회관 지하 사무실에 대해서는 20\$\$.\$\$. \$. \$.~20\$\$.\$\$. \$\$.\$\$.까지 사용허가를 받았음

가과가 ○○이 □□센터 2층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으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사용허가를 통지하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과는 위와 같이 20\$\$, \$\$, \$\$부터 ○○이 □□센터 2층을 사용하도록 한 후 20\$\$, \$\$, \$\$에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고, 20\$\$, \$\$, \$\$에 ○○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았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는 사용 시작일을 20\$\$, \$\$, \$\$로 기재하여 20\$\$, \$\$, \$\$ ○○에 통지하였다.

그 결과 가과는 공유재산법 등에 명시된 행정절차를 위반하여 ○○이 □□센터 2층 사무실을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55일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가. 판단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재정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⁴⁰⁾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소규모 용역 수수료, 세미나 등록비 등), 위탁교육비, 운영수당(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일·숙직비 등), 피복비, 급량비 및 임차료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문화센터⁴¹⁾ 운영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사무관리비⁴²⁾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복합기·정수기 임대 등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40)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시행, 22-28쪽

41) 가과에서 공연장, 음향실, 프로그램실 등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대여하고 있음

42) 가과 예산사항별설명서에 세부사업이 ○○문화센터 운영활성화이고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인 해당 예산은 복합기·정수기 등 임대, 사무용품 구입, ○○문화센터를 기존 ◇◇센터에서 □□센터 2층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가구 등을 이전하는 비용, 입주청소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에 인건비·운영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의 이사⁴³⁾비용 1,300천 원을 [표 3]과 같이 가과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였다.

이는 가과가 관리하는 ○○문화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민간단체의 이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

그 결과 가과는 동두천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 이사비 지원내역 : “생략”

4. 업무 담당자 등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과 다팀 A는 20\$\$.\$\$. \$\$.\$\$.부터 20\$\$.\$\$. \$\$.\$\$.까지 ○○ 등 가과단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가과 다팀 B는 20\$\$.\$\$. \$\$.\$\$.부터 20\$\$.\$\$. \$\$.\$\$.까지 다팀장으로서 다팀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A의 경우

위 사람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법 등에 제시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 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사용료 감면대상인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사용허가를 통지한 후 입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문화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도 받지 않았는데도 사무실에 입주하게 하였으며 소급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절차를 위반하였다.

그리고 ○○문화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예산을 ○○의 이사비용으로 집행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2항” 과 “3항” 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B의 경우

43) ○○ 사무실이 기존에는 ▷▷회관 지하에서 20\$\$.\$\$. \$\$.\$\$.~\$\$.\$\$.에 □□센터 2층으로 이사함

위 사람은 담당자가 공유재산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올바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 사무실 입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시정하지 않고 방관하는 등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2항”, “3항” 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관계부서 의견 및 검토결과

가과는 □□센터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의 이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문제는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으므로 가과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가과는 보조금으로 이사비를 지급해야 했다는 것은 인정하였지만 동두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단체가 부담해야 할 이사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것이고 해당 예산을 다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요구 양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제시된 행정절차를 위반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한 가과 A, B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직무상의 의무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 행정절차를 위반하였으며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아래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행정절차 준수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 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변상명령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1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징계 ·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공공체육시설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징 계 대 상 자 가과 □급 A
징 계 종 류 경징계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동두천시 체육시설 조례”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표 1]과 같이 동두천시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을 대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국민체육센터 기본현황 및 주요시설 : “생략”

2. 국민체육센터 내 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부당 처리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동두천시 체육시설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체육시설의 대관자에게 사용 시설 종류 및 사용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시장은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별표 5 제1호⁴⁴⁾에 따라 반환액을 계산하여 대관자가 이

미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전부 또는 일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0조 제1항 및 별표 4 “사용료의 감면”에 따르면 사용료의 감경은 관내 거주자·상근자·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동두천시 체육시설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액 계산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전부 또는 일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아야 하고 사용료의 감경은 관내 거주자·상근자·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국민체육센터 야구장(이하 “야구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 2]와 같이 동두천시 ○○와 서울□□고등학교에게 사용 승인을 하였으나, 동두천시 ○○는 20\$\$년 4일, 20\$\$년 9일, 20\$\$년 7일, 20\$\$년 4일을 사용하지 않았고, 서울□□고등학교는 20\$\$년 12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취소 신청 등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⁴⁵⁾.

그런데 가과는 위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임의로 미사용일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사용일에서 이전 달의 미사용일수를 공제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반환 채무 성립이 확인되지 않은 사용료 상당 금액에 대하여 사용료 채권과 상계하는 등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표 2] 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부당 처리 내역: “생략”

44) 반환금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는 전액 반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사용료-(사용료× $\frac{\text{이미사용한일수}}{\text{계약상사용일수}}$)-(사용료× $\frac{10}{100}$)’의 산식에 따라 반환함

45) 취소신청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생일이 확인되지 않아 별표 5 제1호에 따른 정확한 반환 금액 산출이 불가하며, 기상악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인한 반환인지 여부도 전혀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서울□□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구에 위치하고 있어 관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하였다.

그 결과 가과는 사용료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동두천시 ○○와 서울□□고등학교에 특혜를 제공하고 동두천시에 재정손실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야구장 사용 승인 신청서 등 문서 접수·관리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동두천시 체육시설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장이 승인한 온라인 방법을 통해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⁴⁶⁾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조례 서식으로 정한 세부사항이 기재된 사용 승인 신청서, 감면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제출받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검토하여 사용 승인 및 사용료 부과를 하여야 하며,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청서 등에 따른 대관 업무에 관한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야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동두천시 체육시설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월·일·시간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46)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

가과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한 후 사용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가과는 동두천시 ○○와 서울□□고등학교가 [표 3]과 같이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2025. 10. 31., 이하 생략)까지 구체적인 사용일·사용 시간 없이 연 또는 월 단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도 승인하였고, 2024. 7. 3. 동두천시 체육 시설 조례가 개정되면서 변경된 신청서가 아닌 기존 서식⁴⁷⁾으로 제출하여 사용 횟수와 사용 인원에 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용 승인을 하였으며, 심지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사용 승인한 경우도 있었다.

[표 3] 야구장 사용 신청 내역 : “생략”

이에 따라 [표 4]와 같이 사실상 주말에는 동두천시 ○○ 전용 야구장으로, 주중에는 서울□□고등학교 전용 야구장으로 사용되었다.

[표 4] 야구장 사용 내역 : “생략”

또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 감면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가과는 동두천시 ○○와 서울□□고등학교로부터 감면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한 번도 제출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표 5]와 같이 야구장 사용료를 감면하여 주었다.

[표 5] 야구장 사용료 감면 내역 : “생략”

그리고 서울□□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구에 위치하고 있어 관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⁴⁸⁾대상이지만 가과가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산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47) 변경 전 서식에는 연, 월, 일, 시까지만 적게 되어 있고 사용인원에 대한 사항은 없으나, 변경 후 서식에는 연, 월, 일 시에 일수, 시간, 회수를 추가로 적고 사용인원도 적도록 되어 있음

48) 동두천시 체육시설 조례 제9조 제4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관외 거주자 또는 관외 거주자 구성 비율이 50% 이상인 단체가 이용·사용할 경우 별표 2와 별표 3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대상임

한편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야구장 사용관리대장과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여 보고하는 국민체육센터 관리일지의 야구장 사용 내역⁴⁹⁾을 비교한 결과, 4년(2011~2014년)의 기간 중 총 20일 동안 사용날짜가 일치하지 않아 실제로 사용한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등 사용 내역도 부실하게 관리하였다.

그 결과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된 공공체육시설 관한 대관 업무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으며, 소수의 단체에게 특혜가 제공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업무 담당자 등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과 A는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국민체육센터 대관 및 사용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였고 가과 B는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C는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팀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A의 경우

위 사람은 국민체육센터 내 야구장 대관 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임의로 미사용일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사용일에서 이전 달의 미사용일수를 공제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감면된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사용일·사용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청서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사용 승인을 해주었고, 심지어 사용 승인·감면 신청서가 없는데도 사용 승인 및 감면을 하였으며, 관리일지 등 사용 내역을 부실하게 관리하였다.

그 결과 “2항” 과 “3항” 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B 및 C의 경우

위 사람은 담당자가 관련 법령 및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 및 신청서 등 문서 접수·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했다. 그런데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시정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49) 국민체육센터 사용날짜, 단체 및 인원 등에 대한 관리일지를 매주 보고함

그 결과 “2항” 과 “3항” 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사용료 부과 시 관련 법령에 맞게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A는 사용료 처리와 관련하여 신청단체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 예상 되어 사용하지 않은 일수만큼 다음 달로 이월하여 상계하면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업무 편의를 위해 이월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두천시 체육시설 조례에 따르면 취소 신청 시기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다르고 취소 신청이 없는 경우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사용료를 이월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요구 양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을 위반하여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 및 신청서 등 문서 접수·관리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A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직무상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국민체육센터 내 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 및 신청서 등 문서 접수·관리 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아래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 국민체육센터 내 야구장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 및 신청서 등 문서 접수·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공공체육시설 대관 시 사용료 부과·징수 및 시설사용 승인 신청서 등의 문서 접수·관리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가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은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 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 징계

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기소유예”의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공소권 없음”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해 통보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하며, “기소유예”의 경우 반드시 관할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공소권 없음”의 경우 징계의결의 요구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 \$\$\$. \$\$\$. A 검찰청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유예”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가과는 20\$\$\$. \$\$\$. \$\$\$. 「공무원 피의사건 결정처리통보 관련 사실조사 및 처리계획」 보고를 하면서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와 사과를 했다는 점, 본인들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점 등의 사유로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서장 전결로 해당 공무원들에게 [표 1]과 같이 훈계 처분하였다.

[표 1]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 훈계 처분 내역 “생략”

한편 훈계 처분 받은 ○명 중 ◎◎◎◎☆급 C는 20\$\$년 하반기 □□□□ 우수공무원 선발⁵⁰⁾에서 20\$\$\$. \$\$\$. \$\$\$.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상장을 수여 받았고, 20\$\$.

\$. \$.자에 ○○○○★급으로 승진⁵¹⁾하였다.

또한 가과는 20\$\$\$. \$\$\$. \$\$\$. 및 20\$\$\$. \$\$\$. \$\$\$.에 B 검찰청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건의 불구속구공판 통보를 받았으나 20\$\$\$. \$. \$.에 이르러서야 위 사건들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등 [표 2]과 같이 업무를 지연하여 처리⁵²⁾하였다.

[표 2]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 지연 처리내역 “생략”

더욱이 20\$\$\$. \$\$\$. \$\$\$. B 검찰청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공소권없음” 을 통보받은 ○건의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자체적인 확인을 통해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관할 인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데도 [표 3]과 같이 별도의 내부 검토 없이 징계의결의 조치를 하지 않고 감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공소권없음” 에 대한 문책 여부를 검토(20\$\$\$. \$\$\$. \$.)하고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 미처리 현황 “생략”

그 결과 공무원의 징계가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법령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기소유예” 사건 ○건과 “공소권없음” 사건 ○건은 20\$\$\$. \$\$\$. \$\$\$. 징계의결 요구 및 문책 등 조치를 완료하였고, 향후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0) 20\$\$\$. \$\$\$. \$.4. ~ \$\$\$. \$\$\$. 사이에 부서 등에서 추천받은 대상자 중 자체심사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며, 징계의결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 대상임

5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중에 있는 경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일정기간(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강등·정직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52) 지연 처리한 ○건의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의 공무원들은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해임” 처분되었고, 지연처리로 발생한 추가적인 위법·부당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징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5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16,88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복무 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에 따라 동두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의 휴가·병가·조퇴·외출 등 각종 복무상황에 대한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가과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경기도 인재개발원 교육 운영 규정」 등에 의해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는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병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VIII-3 휴가제도의 운영에 따르면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지각·조퇴·외출 사실의 목인, 연가 보상비 수령을 위한 연가사실 미기록 등 부적절한 근태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4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 다과는 20\$\$\$. \$. \$\$\$.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집합교육 참석 중 발생한 지각·조퇴·결석 등 근태현황을 각 기관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통보받은 내역을 개인별 근무상황부에 반영하는 등의 교육훈련 복무관리 개선사항을 각 시·군에 안내⁵³⁾ 하였다.

따라서 가과는 각 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 수료자 통보를 받으면 교육 신청시간과 인정시간 차이를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중에 발생한 지각·조퇴·결석 등을 개인별 근무상황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속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각 소속 부서에서는 개인별 근무상황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20\$\$\$. \$. \$.부터 20\$\$\$. \$\$\$. \$.까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신규자 과정 교육훈련 관련 복무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표] “동두천시 교육훈련 복무처리 부적정 현황” 과 같이 교육생 ○○명이 교육 신청시간과 인정시간의 차이만큼 개인별 연가(공가, 병가)처리 등을 근무상황부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특히, 가과는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통보한 신규자 과정 근태내역을 각 부서에 공문

53) 안전행정부에서 각 시·도에 “교육훈련 이수 인정시간 통일 및 복무관리 개선” 안내(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호, 20\$\$\$. \$. \$\$\$.)를 하였고, 경기도는 이 내용을 각 시·군에 안내함(경기도 다과-\$\$\$\$호, 20\$\$\$. \$. \$\$).

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개인별로 메신저 등을 통해 전달하면서 일부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누락하였다.

이로 인해서 [별표] “동두천시 교육훈련 복무처리 부적정 현황” 과 같이 A 등 ○○명은 신규자 과정 근태내역을 통보받지 않아 복무사항을 근무상황부에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개인별 메신저 등으로 통보받은 B 등 ○○명은 근태내역을 통보받고도 근무상황부에 처리하지 않았으며, C는 교육 중 연가를 1시간 사용하였지만 근무상황부에 반영하지 않은 채 퇴직하였다.

이에 따라 [별표] “동두천시 교육훈련 복무처리 부적정 현황” 의 교육생 ○○명 중 D 등 ○명은 [표 1]과 같이 연가시간 18시간 및 연가보상비 216,880원이 초과 지급되었다.

[표 1] 복무상황 미조치에 따른 연가보상비 부적정 지급 내역 “생략”

또한, E 등 ○명은 [표 2]와 같이 복무사항을 근무상황부에 반영하지 않은 채 연가를 모두 소진하여 연가를 초과 사용하였고, F 등 ○명은 [표 3]과 같이 교육 기간 중 병가사용을 복무상황에 반영하지 않아 다음 해에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 1일을 가산받았다.

그 결과 동두천시는 공무원으로서 복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근태관리 등 공직기강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복무상황 미조치에 따른 연가 초과 사용 내역 “생략”

[표 3] 병가사용 미조치 내역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향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신규자교육 대상자의 개인별 성적 및 근태내역이 통보될 시 교육 대상자 소속 부서에 문서 시행하여 근태 내역이 올바르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교육 훈련 중 발생한 복무 사항을 개인별 근무상황부에 지체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가과에서는 정기적인 복무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표 1]의 G, H, I, J와 [표 2]의 K 등 9명이 부적정하게 사용한 연가를 차감하고, [표 1]의 D(107,320원), L(54,380원), M(55,180원)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회수하시기 바라며, [표 3]의 F 등 6명에 대한 연가(1일)를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1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필수보직기간 전보 제한 예외 인원 비율 미준수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 이라고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규채용, 전보 등 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2항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임용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임용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제6호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

별히 인정하는 경우(이하 “제6호 예외사유”라 한다)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율을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 이내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필수보직기간 전보 제한 예외사유(임용령 제27조 제4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¹⁾이 정하는 인사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4.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¹⁾이 정하는 경우 5.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같은 규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라 희망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6.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
|--|

자료: 지방공무원 임용령 발체

따라서 가과는 상·하반기 정기인사 등 전보 인사 시 제6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가 있는 경우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그 비율을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 이내로 한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2]와 같이 20\$\$년에 총 181명을 전보인사하였는데, 그중 90명이 제6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그 비율이 법정 한계인 10%를 훨씬 초과한 약 49.7%로 확인되었고, 20\$\$년은 연간 전체 전보인원 245명 대비 제6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이 120명으로 그 비율이 약 48.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년은 연간 전체 전보인원 216명 대비 제6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이 100명으로 그 비율이 약 46.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20\$\$년은 연간 전체 전보인원 236명 대비 제6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인원이 97명으로 그 비율이 약 41.1%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제6호 예외사유 비율 미준수 현황(2022~2025년) “생략”

그 결과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정년퇴직, 육아 및 질병휴직, 인사 고충에 따른 전보 등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위해 인력배치를 위해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추후 필수보직기간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필수보직기간 전보 제한 예외 인원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전보 인사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보 인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17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추징	재정상 조치금액	2,050,00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주·정차 위반 단속 면제 처리 운영 부적정 및 과태료 미부과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고정(차량)형 CCTV 단속 장비와 동두천시 주정차 과태료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관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160조 등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횡단 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등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도

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르면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제1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제2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제3호),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제4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제5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6호)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5-446호 의 결사항54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를 [표 1]과 같이 구체화하여 나타내면서 이외 사항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추가 또는 보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과 필요서류 등을 조례 또는 규칙에 자치법규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 1]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기준 구체화 개선방안(국민권익위원회)

구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54)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결사항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전파[국민권익위원회 다과-\$\$\$\$ (20\$\$.\$\$. \$\$.\$\$.)]하였고, 동두천시 나과는 가과에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나과-\$\$\$\$ (20\$\$.\$\$. \$\$.\$\$.)]함

구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 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0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	운송장 사본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2015-446호) 발췌

그리고 같은 개선방안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나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토록 규정화하라고 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의견진술심의회 운영을 통해 면제 사유, 관련 증빙의 타당성을 개별 검증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견진술심의회를 미운영하는 경우, 면제 건에 대해 각 일건 당 담당, 결재권자의 서명을 의무화하여 면제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미부과인 상태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과 필요서류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 과태료 면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정차 위반 단속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감사 기간(20\$\$\$. \$\$\$. \$\$\$. ~ \$\$\$. \$\$\$.) 중 동두천시 주정차 과태료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점검한 결과, 가과는 20\$\$\$. \$. \$\$\$.부터 감사일 현재(20\$\$\$. \$\$\$. \$\$\$. 이하 생략)까지 [표 2]와 같이 민원신고, 고정형 CCTV, 차량형 CCTV 등을 통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였는데도 과태료 2,050,000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2] 주·정차 위반 대상 과태료 미부과 현황 “생략”

또한, 가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각호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태료 면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확인이나 개별적인 검토가 없었는데도, [별지]와 같이 20\$\$\$. \$\$\$. \$\$\$. 임의로 ○○대의 차량을 시스템에 과태료 면제 차량으로 등록하여 운영⁵⁵⁾하고 있었고,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 결과,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업무의 적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업무

55) 단속 면제 차량으로 등록된 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 위반 적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당하게 과태료가 면제 처리된 사항은 없었으며, 신규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이 착오로 과태료 면제 차량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됨

전반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다수의 민원 처리와 CCTV 단속자료 검토 등 업무가 병행되는 과정에서 과태료 면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증빙자료 확인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과태료 면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면제 사유 검토 및 증빙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시스템에 착오 등록한 과태료 면제 차량을 삭제하시고, 미부과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2,050,000원을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과 필요서류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과태료 면제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18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처분의무 부과농지의 사후관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농지법」 등에 따라 동두천시 관내 지역에 대한 처분의무 부과농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농지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 · 농지개량 ·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하고, 처분의무 기간(1년 이내)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법」 제6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⁵⁶⁾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처분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IV.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가 확정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처분의무이행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는 처분의무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농지처분의무가 확정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처분의무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처분의무이행여부를 조사하여 처분의무 기간 내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 처분토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21~2024년까지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농지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 기간(2025. 10. 29.~11. 6.)에 농지 처분의무 통지 실태를 확인 결과, 별지의 [별표] “농지처분의무통지 내역(2021~2024)” 과 같이 “○○동 ○○번지” 등 ○○건에 대하여 처분의무기간이 지났는데도 처분의무이행여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처분 미이행 소유자에게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실질적으로 면제 처리되고 감사일 현재(2025. 11. 6.)까지 해당 농지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

56)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이행강제금) 제3항 1.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다.

그 중 “○○동 ○○번지” 농지소유자 ○○○에게 농업경영 미이행의 이유로 202○년과 202○년 2회에 걸쳐 처분의무 대상 농지로 통보하였는데도 처분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감사일 현재 까지 해당 농지를 ○○○이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

그 결과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소유자가 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게 되었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 결과를 인정하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처분의무 부과농지의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동두천시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의무 부과농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처분의무 부과농지 미처리 사항에 대하여 농지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지]

[별표] 농지처분의무통지 내역(2021~2024) “생략”

일련번호	19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산지전용허가(협의) 사후관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동두천시 관내 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사후관리 등 산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 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를 착수하기 전의 기간,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이하 “이 건 제출기간”이라 한다)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이 건 제출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40조제1항 전단(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법 제57조제1항			
1) 1천㎡ 미만인 경우		25	50	100
2) 1천㎡ 이상 1만㎡ 미만인 경우		50	100	200
3) 1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150	300	600
4) 10만㎡ 이상인 경우		250	500	1,000

자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발췌

따라서 가과는 산지전용허가(협의)에 따라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 의무자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가면적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2]와 같이 “○○동 ○○○번지 외 1필지” 등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 만료에 따른 복구설계서 미제출 ○○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지 복구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표 2]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 만료에 따른 복구설계서 미제출 내역 “생략”

그 결과 관련법에 따라 복구되어야 할 산지전용지가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었다.

3.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 만료에 따른 사후관리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산지관리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사항을 해당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하고,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산지전용등의 기간에 따라 [표 3]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표 3] 산지전용등의 면적에 따른 지급보증서 가산 기간

산지전용등의 면적	가산 기간
1.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월 이상 8월 미만
2.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8월 이상 10월 미만
3.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월 이상 12월 미만
4.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2월 이상

자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제6항 발췌

또한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를 착수하기 전의 기간,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 이내까지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복구비를 예치한 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

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복구의무자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예치된 복구비로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산지전용허가(협의)에 따른 복구 미완료 사항에 대하여 복구비 지급보증서 보증기간 내에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하여 복구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 (2025. 11. 6.) “○○○동 산○○-○○번지 외 1필지” 등 ○○건에 대하여 [표 4]와 같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하여 복구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그 중 “○○○동 산○○-○○번지” 등 ○○건은 제출받은 지급보증서 기간 만료 전 복구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지급보증서 기간이 만료되어 예치된 복구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표 4] 산지전용허가(협의) 기간 만료에 따른 복구 미완료 내역 “생략”

그 결과 위 산지전용지가 복구의무자의 파산 등의 이유로 산지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시 예산을 들여 복구하여야 하는 등 복구대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4. 산지전용허가(협의)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여부 확인 및 조치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산지관리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의 효력은 해당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야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등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건축물(단독주택, 근생 등)을 수반하는 산지전용허가(협의) 시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 절차 이행 없이 산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협의)의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시 ① 본 협의의 효력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건축물이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하며, ②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인가·허가·승인이 취소 또는 거부될 때에는 본 협의는 취소되고, ③ 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관련 인허가를 득하기 전 사전 착공은 산지관리법 제53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포함하여 협의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기간(2025. 10. 29.~11. 6.)동안 산지전용허가(협의)에 따른 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 결과, [표 5]와 같이 “○○동 산○○번지 외 1필지” 등 ○○건에 대하여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없이 착공하였다.

[표 5] 산지전용허가(협의) 중 건축허가(신고) 미이행 내역 “생략”

그 결과 위 산지전용지가 건축허가(신고) 없이 착공되어 산림이 훼손되었다.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결과를 인정하며 향후 산지관리 업무 시 법령과 지침 등을 보다 면밀하게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으며, 다만 산지 관련 모든 허가와 불법 산지관리 등을 담당자 1명이 모두 처리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산지전용허가(협의)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전용허가(협의) 사후관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산지전용허가(협의) 사항에 대하여 복구설계서 제출(과태료 부과 포함), 허가기간 만료지 복구, 건축허가(신고) 이행 및 산지전용허가(협의) 시 행정처분[건축허가(신고) 등] 후 착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전용 담당자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20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산지전용허가(협의)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동두천시 관내 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등 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료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 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별표 4] 1. 마. 11)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단독주택 축조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해당 신청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인지 확인하는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로부터 “○○동 산○○○번지 외 1필지” 임야에 단독주택 신축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산지전용 협의 요청 온 사항에 대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의 소유 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주택 축조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협의)가 불가한데도, 산지전용허가(협의) 신청에 따른 심사내역상 자기 소유의 산지 적합으로 검토하고 산지전용이 가능하다고 협의 결과를 회신하는 등 [표]와 같이 산지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단독주택 축조 목적의 산지전용허가(협의) 처리하였다.

[표] “○○동 산○○○번지 외 1필지” 등 산지전용허가(협의) 내역 “생략”

그 결과 단독주택 축조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 자가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산지전용허가(협의)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전용허가(협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생산관리지역 내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농지법」 등에 따라 동두천시 관내 지역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등 농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전용허가 받은 자의 명의,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⁵⁷⁾.

그리고 「농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와 제5항에 따르면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외의 지역(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등)에 있는 농지를 단독주택(「건

57) 「농지법」 제5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진흥지역 3천제곱미터, 농업진흥지역 밖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포함) 및 협의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1,000㎡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없고,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따라서 가과는 민원인으로부터 생산관리지역 내 농지에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같은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농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합산한 농지전용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협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20. 5. 00. 다과로부터 “00동 000-0번지 외 3필지” (면적: 956㎡) 생산관리지역 내 농지에 단독주택 및 도로 목적의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신청인 ◆◆◆)과 관련하여 농지전용 협의 요청 온 사항에 대해 2020. 1. 00. ◆◆◆에게 “00동 000-00번지” (면적: 465㎡) 생산관리지역 내 농지에 단독주택 목적으로 기 협의 한 사항이 있어 연접하여 같은 목적으로 1,000㎡를 초과하여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한데도, 농지전용허가(협의) 신청에 따른 심사의견서에 농지법 저촉없이 협의처리 적합으로 검토하고 [표]와 같이 2020. 5. 00. 다과에 농지전용이 가능하다고 협의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2020. 5. 00. 개발행위(변경)허가 후 2020. 6. 00. 최종 사용승인 하였다.

[표] 전용제한면적 초과 농지전용허가(협의) 내역 “생략”

그 결과 ◆◆◆은 「농지법」 제37조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농지전용 제한면적(1,000㎡)을 421㎡를 초과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결과를 인정하며 앞으로 충분한 업무연찬과 관련 규정 숙지로 동일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농지전용허가(협의)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전용허가(협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 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르면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단열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5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마감재료, 방화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등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품질관리서 작성대상이 되는 단열재, 방화문 등에 대한 성능 확인과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1]과 같이 2020. 1. 00. 동두천시 00동 000번지 외 1필지 건축물(이하 “00동 000번지 건축물” 라 한다)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한 공사감리완료보고서와 품질관리서, 자재 시험성적서 등을 검토하여 2020. 3. 00. 사용승인 처리를 완료하였다.

[표 1] 사용승인 건축물 현황 “생략”

그러나 00동 000번지 건축물에 (주)000000에서 납품한 건축용 단열재 (준불연 80T, 3,200㎡) 사용되었고 사용승인에 필요한 품질관리서가 누락 되었는데도 건축물 사용승인이 처리되었다는 민원이 2020. 6. 00. 접수되었고, 가과가 해당사실을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확인한 결과 00동 000번지 건축물은 (주)000000와 (주)000000 두 개 유통업체로부터 단열재를 납품 받았고, 사용승인시 제출된 품질관리서에는 (주)000000가 유통한 단열재의 품질관리서만 제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가과는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를 「

건축법」 제52조의4 규정 위반으로 202①. 6. ①①. 고발하였다.

이후 가과에서 ○○동 ◇◇◇번지 건축물 사용승인 시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자재의 누락이 있는지 재확인하기 위해 공사시공자에게 단열재 시공물량 및 공급물량을 확인한 결과 ♣♣♣♣♣이 제조하여 (주)△△△△△에서 유통한 단열재(PF보드 130T/1,350㎡)가 추가 누락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현황 및 누락사항은 [표2]와 같다.

[표 2]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현황 “생략”

가과는 품질관리서에서 누락되었으나 실제 시공된 단열재 2종에 대해 화재 안전 성능을 확인한 결과 단열재 2종 모두 화재안전에 적합한 난연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었으며 품질관리서 누락 단열재에 대한 품질 적합 현황은 [표3]과 같다.

[표 3] 품질관리서 누락 단열재 품질 적합 현황 “생략”

가과는 ○○동 ◇◇◇번지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품질관리서에 시공 단열재가 누락되었음에도 건축물을 사용승인 처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관리서 제출의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용승인 검사 절차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해당 건축물에 열반사 80T와 PF보드 130T 단열재가 사용되었으며 품질관리서는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되었으나, 현행 「건축법」상 자재 사용물량 제출 의무가 없어 실제 투입된 단열재의 수량 확인이 미흡하였다고 밝히면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등의 업무를 철저히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미이행 처분 미조치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에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처리 업무와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 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⁵⁸⁾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자⁵⁹⁾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58)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59) 「건축물관리법」 제2조 3호에 따르면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함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요구조부⁶⁰⁾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⁶¹⁾,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로 정하는 건축물⁶²⁾을 해체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해체계획서⁶³⁾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⁶⁴⁾에 따르면 위반건축물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되어 있다.

한편 「건축물관리법」 제52조 제7호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 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2022. 2. 3. 법률 제18824호 개정되기 전의 것)⁶⁵⁾ 제40조 [별표 5] 2.-더에 따르면 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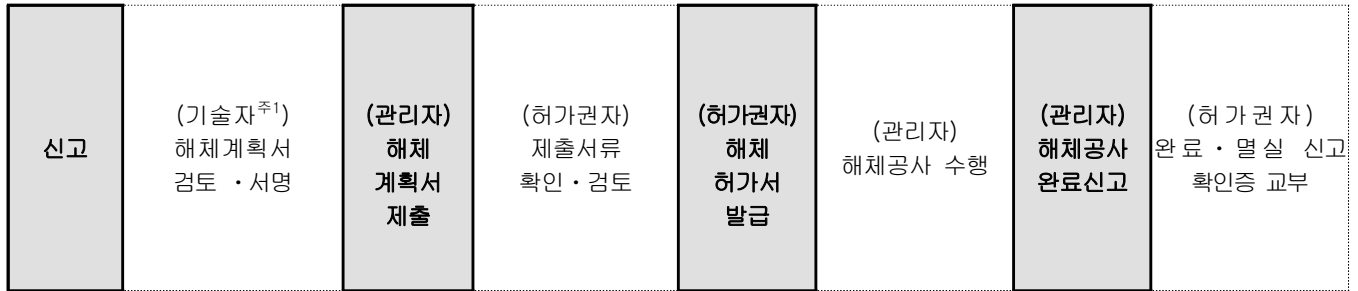
따라서 가과는 위반건축물이 2020. 5. 1. 이후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통하여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절차에 따라 해체공사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행위 시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020. 5. 1.부터 2022. 8. 3. 까지)하거나 고발처분(2022. 8. 4. 이후부터)을 하여야 한다.

60) 「건축법」 제2조 제1항 7호에 따르면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함
 61)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62)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과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과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을 말함
 63)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가 작성(해체 허가)하거나 검토(해체 신고)하고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말함
 64) 국토교통부 건축물 해체공사 FAQ(지자체용, 2022. 9.) Q8에 따르면 위반건축물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건축물해체공사 FAQ(지자체 등, 2024.12.) Q1에서는 사용 승인 전 건축물이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기준을 보다 더 구체화
 65) 법률 제18824호 2022. 8. 4. 시행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건축물관리법」이 2020. 5. 1. 시행되면서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해체신고 절차에 따라 건축물 해체를 위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 신고, 해체허가서 발급, 해체공사 완료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림] 건축물 해체신고 절차



주 1.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건축물의 해체의 신고대상 건축물 등의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를 말함

자료: [건축물 해체제도 안내]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안내문 및 법령 재구성

가과는 위반건축물의 관리와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축물관리법」이 2020. 5. 1.부터 시행되어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별지의 [별표] “건축물 해체 신고 관련 처분 미이행 현황” 과 같이 ○○건의 위반건축물의 시정완료 시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않고 위반건축물의 철거 여부만 확인하여 시정 완료 처리하였다.

그 결과 해체 절차에 따른 신고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건축물관리법」의 취지를 저해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위반건축물 해체 허가 처리 미이행에 따른 처분 누락과 관련하여 향후 관련내용 숙지 및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업무 추진상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건축물해체허가(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향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시 건축주가 해체허가(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건축물 해체 미허가(신고) 위반건축물에 대해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지]

[별표] 건축물 해체 신고 관련 처분 미이행 현황 “생략”

일련번호	2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입찰(견적제출) 참가 자격요건 미비 업체와 용역 계약 체결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등에 따라 [표]와 같이 “□□ 용역” 등 ×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입찰(견적제출) 공고 및 계약 체결 현황 : “생략”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 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2조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 및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는 나라장터(G2B)에 작성·게시한 공고문에 명시한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와 같이 20××. ××. ××. 나라장터(G2B)에 □□ 용역” 공고문을 작성·게시하면서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이하 “위 자격요건” 이라 한다)으로 제한하였으나, 견적 제출업체의 자격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동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 ××. ××.과 ××. ××. 두 차례에 걸쳐 “■■■ 용역” 공고문을 나라장터(G2B)에 게시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위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제한하였음에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가과는 입찰(견적제출) 참가 자격요건 미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 계약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행위 당시 연말 계약 물량 과다 등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면서 향후 계약 관련 규정을 세세히 살피고 사업부서와의 교차 검증을 통해 건전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입찰(견적제출) 참가 자격요건 미비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혼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혼계**)

- 앞으로 계약 업무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자격요건이 미비한 업체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5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징계 ·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위생업소 행정처분 업무 부당 처리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징계대상자 가과 ○○ ☆급 ●●●

징계종류 경징계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처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법 제7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과 같다고 되어 있으며, 그 처분의 기준을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 행정처분 기준 : “생략”

따라서 가과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행정처분 할 때에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처분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 ××.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소비기한을 경과한 식재료를 진열·보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 △△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으로 송치된 사항을 통보⁶⁶⁾받았다.

그리고 20××. ××.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위 업소에 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처분기준에 있는 영업정지 ××일이 아닌 영업정지 ××일로 기재하였고, 이후 20××. ××. ××. [표 2]와 같이 위 업소 대표자에게 영업정지 ××일로 행정처분 명령을 확정하여 통보하였다.⁶⁷⁾

[표 2]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현황 : “생략”

그 결과 가과는 위 업소가 8일 동안 부당한 영업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품으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66)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2020. ○. ○○.)호

67) 20××년 ××월 타 업소에 대한 사건 처분 결과가 기소유예로 통보되어 2분의 1 감경 처분한 사례가 있어 “기소유예” 와 “기소의견” 이 명백히 다름을 인정한 상황임

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제외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8.-가.-3)-가)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은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너.-2)는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2년마다 모든 항목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II.-3.-8.-사)에 따르면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시설개수 명령이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 「2019년 하반기 자주 하는 질문집(식품의약품안전처)」 Q.36은 지하수 수질 검사 시 부적합이었으나 재검사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가 여러 차례 수질검사를 시행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앞서 부적합 판정이 있었다면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 업소에 시설개수 명령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년부터 감사일 현재(2025. 11. 6.)까지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후 적합

관정을 받은 ××개 업소에 시설개수명령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가과는 20××. ××. ××. (주)중앙생명연구원이 통보한 식품접객업소 ●●의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자 20××. ××. ××. 부적합 지하수에 대한 사용중지를 통보하고서도, 위 업소가 수질검사를 재차 의뢰하여 20××. ××. ××. 재검사 결과 적합 관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적합 관정을 받은 결과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표 3]과 같이 시설개수 명령 행정처분에서 임의로 제외하였다.

[표 3] 행정처분 제외 대상 처분내용 : “생략”

그 결과 먹는 물과 식품에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와 행정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7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4.-가.에 따르면 미용업자는 점빠기·긁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법 제4조 제4항 각 호 및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 “과태료의 부과”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행정처분기준”은 [표 4]와 같이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 2] “과태료의 부과” 1.-가.-4)는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4]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 “생략”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제4호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하려면 청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이전에 청문을 통해 대표자의 의견을 듣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 ××. ××. 미용업소 ☆☆의 유사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20××. ××.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하여 해당 업소에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가과는 위 업소의 대표자가 영업정지와 과태료의 동시 부과는 부담이 크므로 과태료를 2분의 1로 감경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적발 당시 불법 문신 기계를 치우고 안내문을 삭제했다는 사유만으로 위 업소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임의로 과태료 감경 사유로 인정하여 [표 5]와 같이 과태료 기준 금액인 ◇◇만 원에서 2분의 1 감경한 ◇◇만 원으로 부과하였다.⁶⁸⁾

[표 5] 과태료 부과 현황 : “생략”

68) 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한 ××건 중 해당 업소만 과태료가 임의 감경됨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문하여 영업자의 의견을 듣고 처분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표 6]과 같이 위 업소를 포함한 총 ▲개 업소에 대해 청문하지 않은 채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였다.

[표 6] 청문 미 실시 현황 : “생략”

그 결과 영업자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그 시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정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는 등 행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5. 업무 담당자 등의 부당한 업무 처리

가과 나팀 ●●●은 20××. ××. ××.부터 20××. ××. ××.까지 위생업소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가과 나팀장 ◆◆◆은 20××. ××. ××.부터 20××. ××. ××.까지 나팀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의 경우

위 사람은 위생업소 행정처분 등의 업무 담당자로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 관리법」 등을 숙지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감경 기준 등을 엄정하게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그러나 위 사람은 식품접객업소 △△이 “기소의견” 으로 송치된 사항을 “기소 유예” 로 오인하여 실제 처분기준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일을 “2항 나” 와 같이 영업정지 ××일로 감경 처분하였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이 준수하여야 하는 법령은 「식품위생법」이고 「식품위생법」을 관할하는 중앙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인데도 해당 부처에서 발간한 질의응답집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문의하여 “지자체에서 적의판단 하라” 는 유선 답변을 듣고 “3항 나” 와 같이

수질검사 부적합 업소를 행정처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미용업소 ☆☆의 위반행위 적발 당시 불법 문신 기계를 치우고 안내문을 삭제했다는 점을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 행위자의 노력이라고 자의로 해석함으로써 “4항 나”와 같이 과태료를 감경하여 부과하였으며, ☆☆를 포함한 ■개 업소에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면서 청문하지 않아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밝힐 기회를 박탈하였다.

그 결과 “2항”, “3항” 및 “4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의 경우

위 사람은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식품접객업소 ●●에 대해 “3항 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3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6.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였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위생업소 행정 처분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 위생업소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위생업소 면허증서 교부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표 1]과 같이 관련법령에 해당하는 위생업소의 영업 및 설치·운영 신고 등(이하 “신고 등” 이라 한다)을 처리하면서 면허증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표 1] 각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업소 현황 : “생략”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르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르면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는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 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신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신고, 집단급식소의 신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신고와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업·미용업의 면허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신고와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그 납세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식품접객업, 미용업 등 위생업소의 신설 또는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면허증서를 교부하기 이전에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관련 부서에서 매년 해당 업소의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업소 신고 등의 사항을 처리하면서 별지의 [별표] “등록면허세 납부 미확인 업소 현황” 과 같이 총 2개소의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였으며, 이미 면허증서가 발급된 위생업소의 지위승계, 주소지 변경 등이 신청되었을 때에는 해당 내용의 면허를 변경하기 이전에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사항 및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하였다.

또한 ◇◇ 등 ◆개소에 대한 신규 신고 등을 처리할 당시 등록면허세 총 ××원을 부과하였으나 최소 ■■개월에서 최대 ●●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2025. 11. 6., 이하 생략)까지도 납부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 등 ■개소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를 누락하여 현재까지 ★★개소의 누락된 금액이 총 ××원에 이른다.

특히 감사일 현재까지 등록면허세 납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별표 연번 1번, 연번 18번, 연번 20번 등 등록면허세 부과를 장기간 누락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그 결과 동두천시의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조세 형평성의 원칙이 훼손되었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업소 개설 및 영업자 변경 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신고증 발급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누락된 사례가 발생하였고 향후에는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발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업소의 등록면허세 부과 및 납부 확인에 관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위생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각 업소에 대해 부과하지 않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이 누락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등록면허세 납부 미확인 업소 현황 : “생략”

일련번호	27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소 나과 (다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 변경 등 검토·허가 부적정 등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소 (나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다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소 나과(이하 “나과” 라 한다)는 「의료법」, 「민법」 등에 따라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과 정관 변경 등을 허가하고 의료법인의 사무를 검사·감독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 변경 등 검토·허가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⁶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51조와 제54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매도, 증여, 임대 등)이나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서 및 이사회 회의록(재산 처분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추가) 등 관계 서류를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9)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의료법」 제48조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 허가 등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보건복지부)」(이하 “운영 편람”이라 한다) II.-3.-나.-③ 및 다.-③ 정관 변경 및 기본재산 처분 허가 처리 시 검토 사항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일시, 장소, 의사 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목적과 부의안건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 참석이사 전원의 기명 등 결의의 성립 등에 흠이 없는지, 회의록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이사의 인감을 간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다.

한편 「의료법인 ㄱ재단 정관」 제23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정관 제24조 제2호에 따르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금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할 때 그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과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및 정관 변경 등을 허가하려고 할 때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관계 서류가 온전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1)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 검토·허가 부적정

나과는 ○○이 20××. ××. ××. 장례식장을 직영에서 임대로 변경 운영(20××. ××. ××. 계약)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처분(장례식장 임대) 건”의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이사회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하자, 20××. ××. ××. ○○의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표 1]과 같이 ○○의 이사 ●●●이 동시에 임차인인 □□의 대표자이므로 이사와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 해당⁷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 “기본재산처분(장례식장 임대)의 건”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에

70) 별개의 법인의 이사 또는 대표 등을 겸하고 있는 자가 양쪽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대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대법원 2010다91831판결, 대법원 2017다207932 판결 참조)

따른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가 적합한지 등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였으며 감사일 현재 (2025. 11. 6., 이하 생략)까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표 1] ㄱ재단 장례식장 운영 관련 서류 : “생략”

그 결과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허가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정관 변경 등 검토·허가 소홀

동두천시 관내의 ■■과 ○○은 각각 20××. ××. ××.과 20××. ××. ××. 정관 변경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후 허가를 받기 위해 나과에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나과는 [표 2]와 같이 두 재단이 기존에 임원 선임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던 것과 달리, 제출된 정관 변경 등과 관련한 회의록에는 기존의 인감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검토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허가하였다.

[표 2] 의료법인 이사회 인감 날인 비교 : “생략”

그 결과 의료법인의 정관 변경 등이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허가되어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의료법인 사무 검사·감독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민법」 제37조에 따르면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고 되어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르면 시·도지사⁷¹⁾는 의료법인을 감독하는 데에 필요

71)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 관계되는 서류, 장부, 참고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운영 편람 II.-3.-사.-(1)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과는 의료법인이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보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성립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고, 필요시 의료법인의 사무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사·감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나과는 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동두천시 소관의 ★개 의료법인이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고 [표 3]과 같이 △개월부터 최대 △개월을 초과하여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의료법인이 운영 편람을 준수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도를 하지 않았다.

[표 3]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현황 : “생략”

그중 ㄱ재단에서 20××. ××. ××. 재단 회생 동의, 20××년 사업실적 및 20××년 사업계획, 20××년 말 기준 재산 등의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20××. ××. ××. 나과에 보고하였는데 [표 4]와 같이 전체 임원 ▼명 중 ◆명 참석, ■명 불참으로 의사정족수가 부족⁷²⁾하여 이사회가 개최될 수 없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할 수 없던 상황인데도 나과는 별다른 확인 없이 이를 인정하여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은 시장·군수에게 위임

72) 위 재단 정관 제23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표 4] 2020. 10. 0. 7재단 이사회 개최 현황 : “생략”

또한 나과는 동두천시 소관인 ♀♀ 등 ▲개의 의료법인 사무를 검사·감독하기 위하여 서류 및 장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증빙서류 및 재산대장, 부채대장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도 [표 5]와 같이 ▲개의 의료법인 모두 설립일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그 사무와 관련한 검사·감독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표 5] 의료법인 검사·감독 실시 현황 : “생략”

그 결과 의료법인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하는 주무관청의 검사·감독 기능이 약화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의료법인 변경등기 확인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시·도지사⁷³⁾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운영 편람 II.-3.-바.-(1)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보고서에 선임된 자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과는 의료법인이 임원을 선임하면 7일 이내에 보고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등기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서류 제출 여부와 변경된 내용에 따른 변경등기 완료 여부를 7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73)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설립등기 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나과는 의료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할 때 여러 안건을 취합해서 한 번에 의결한다는 이유만으로 [표 6]과 같이 ○○과 ■■이 임원을 선임한 후 하고 최소 ●●일에서 최대 ◇◇일이 지나서야 임원 선임을 보고하였는데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에 기한 준수에 대한 안내 등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 등 ▲개 의료법인이 임원 선임 이후 등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관련 조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변경된 등기사항도 확인하지 않았다.

[표 6] 임원 선임 보고 및 변경등기 확인 현황 : “생략”

그 결과 의료법인이 변경등기 등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었으며, 의료법인을 관리하는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나과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숙지가 부족하여 의료법인 관리·감독 등의 업무가 미흡하였고, 향후 동일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완벽히 숙지하여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의료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법인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28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소 나과 (다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마약류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소 (나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다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소 나과(이하 “나과” 라 한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이라 한다) 등에 따라 마약류취급자⁷⁴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관리·폐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마약류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폐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74)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대마재배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말함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는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24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장-Ⅳ.-1.-1-5.-다. 휴·폐업 마약류취급자의 보유 마약류 처분계획 이행여부 점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취급자가 휴·폐업했을 때에 의료기관 등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처분계획 등을 확인하여 처분계획 등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 등으로 불법 유출을 차단하여야 하고, 휴·폐업한 후에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폐기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이하 “NIMS”라 한다)을 통해 보고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과는 마약류취급자가 휴·폐업을 신청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처분계획을 파악하고 휴·폐업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후 이행여부 점검 등을 통해 마약류의 재고량 또는 폐기 사항이 NIMS를 통해 보고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나과는 마약류취급자가 휴·폐업할 때 NIMS상의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을 확인하여 마약류가 유실되거나 불법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표 1]과 같이 ◇◇ 등 ◆개 기관이 폐업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거나 그간의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 현황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케타민염산염주사(전신마취제) 등 ◎종의 마약류 약 ◇◇정(바이알, 패취 포함)의 행방을 감사일 현재(2025. 11. 6., 이하생략)까지 파악하지 못하였다.

[표 1]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마약류 현황 : “생략”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폐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하여 그 내역이 NIMS에 보고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나과는 해당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 보고 여부도 파악하지 않았으며, NIMS에 재고량이 남아있는 채 폐업 처리를 완료하여 그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은 20××. ××. ××.부터 휴업 중인데 ◆◆이 휴업을 신청한 당시에 마약류취급자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처분계획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휴업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보유한 마약류의 처분계획을 제출받지도 않고 이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 등도 실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NIMS 상 ◆◆이 보유하고 있는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마약성진통제) 등 ★★종의 마약류 약 ◇◇정(애플 포함)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로라반정(정신 신경용제) 등 △종의 마약류 ♡정에 대한 재고량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마약류의 재고량 차이가 발생한 원인조차 감사일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한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2] 휴업 기관 마약류 재고 현황: “생략”

게다가 [사진]과 같이 삼진디아제팜(항우울제) 등 □종의 마약류는 의약품 전용 용기가 아닌 약 포장지에 조제·밀봉 또는 개봉된 채 보관되어 있었고, 해당 마약류가 처방 후에 반납된 것인지 조제가 가능한 것인지 등의 보관 경위조차 알지 못하는 등 마약류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사진] 의약품 전용 용기 외 보관 현황: “생략”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이 마약류 취급과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나과는 향후 마약류취급자가 휴·폐업할 경우 보유 중인 마약류 재고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절차로 양도 또는 폐기하여 마약이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으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마약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마약류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가 나는 휴·폐업한 마약류취급자에게 행정처분, 고발(수사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29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소 나과 (다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 ·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건강증진사업 의약품 등 구매 수의계약 및 관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소 (나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다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소 나과(이하 “나과” 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이라 한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건강증진사업 관련 의약품 등의 구입, 출납,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의약품 등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 라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⁷⁵⁾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장-제1절-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5장-제3절-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에 따르면 용역·물품 기타의 경우 추정가격 1억 원 이하⁷⁶⁾인 경우 2인 이상 견적제출 대상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 집행기준 제5장-제3절-1.-나.-1)에 따르면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3일 이상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과는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아야 하고,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을 구입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고 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나과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 등의 의약품 등이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데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단일 사업을 시기적으로 부당하게 분할하여 의약품 등을 구입하였다.

또한 구입한 의약품 등의 총 금액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에 해당하여 단일건으로 물품을 계약하여야 하는데도 [표 1]과 같이 20××년 ××건, 20××년 ××건, 20××년 ××건으로 분할함으로써 총 △△건을 ◇◇ 등 ●●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7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 구매인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76) 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3. 1. 1. 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장-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에 따르면 용역·물품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를 2인 이상 견적 제출로 구분하고 있음

[표 1] □□사업 분할 수의계약 체결 현황 : “생략”

그 결과 다수 업체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물품 및 소모품(의약품 등) 관리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공유재산법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이하 “운영기준” 이라 한다)Ⅱ-2.-다.-3) 및 4)에 따르면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 대장에 수불상황을 기록·관리 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소모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운용부서에 불출하여 관리 중인 소모품에 대하여는 사용 공무원이 관리하여야 하며,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소모품의 경우 재고 운용수준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총괄)」 제3장-제2절 예산편성 및 유의 사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방만한 예산집행, 예산낭비요인 등이 없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은 관련 법령 등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기타 개별 법령⁷⁷⁾에 따라 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나과는 각 사업별로 물품 및 소모품(의약품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연간 소요량 등을 파악하여 물품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구입한 물품·소모품을 분실하거나 방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며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소모품의 경우 재고 운용수준을 적정하게 관리

77)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금연)」 제2부-Ⅲ-2-1) 예산운영 기본 원칙에는 관련 법령에 공유재산법도 포함되어 명시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나과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추진하면서 물품 구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의약품 등의 입·출고 내역을 작성하지 않거나 일자와 수량을 허술하게 입력하는 등 별지의 [별표] “건강증진사업 수불대장 부적정 관리 현황” 과 같이 감사일 현재(2025. 11. 6., 이하생략)까지 ☆☆사업 등 ◎◎개 사업의 물품 수불대장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

특히 ■■사업은 20××년 ××월 ◆◆를 타 사업에서 구입한 물품으로 위 사업의 수불대장에 착오 입력된 채 1년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잔고가 -◆◆개인 상태로 남아있는데도 대장 정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

또한 ▲▲사업의 ■■는 20××. ××. ××. 재고 수량이 ▼▼개로 ◎◎개가 출고될 수 없는데도 다음 날 ◎◎개의 기저귀가 출고되어 잔고가 -▷▷인 상태로 기록되는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물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건강증진사업의 공공 의약품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나과는 부적정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날짜 착오 등의 사유로 물품 및 소모품을 실제 입고일과 다르게 입력하였고 잔고가 부족하여 출고가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 출고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잔고에 오류가 발생하였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사항을 인정하고 향후 물품 관리 대장을 철저히 작성 및 관리하여 물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의약품 등 구매 수의계약 등을 부적정하게 한 아래 관련자를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증진사업 의약품 등 구입·관리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지적된 의약품 등을 포함한 나과 소관 의약품 등의 입·출고 및 재고 현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사업별 구입 예정 품목과 수량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지]

[별표] 건강증진사업 수불대장 부적정 관리 현황 : “생략”

일련번호	30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장기요양기관 특정목적사업 예산 운용 지도·감독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노인복지법」 제42조 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그 적립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기준 별첨-1.-9.-다. “환경개선준비금(또는 운영충당적립금)의 관리 등”에 따르면 특정목적사업 예산(환경개선충당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 처리 후 이를 각각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시·군·구 지도점검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어야 하며⁷⁸⁾ 적립 시점으로부터 당초 적립목적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 적립금액 전체에 대해 상시 현금화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가입 시 예금주는 시설명으로 하여야 하며, 기존에 가입한 상품 중 예금주(수익자)가 개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설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장기요양기관에서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을 적립할 경우 사용계획(변경된 계획 포함)을 사전보고 하였는지, 일반회계에서 세출 처리 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지, 특정목적사업 적립금은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지도·점검시 확인하고, 사전보고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적립 여부·규모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조치를 하는 등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별지의 [별표 1] “노인복지시설 특정목적사업 예산운용 및 지도·점검 미이행 내역” 과 같이 장기요양기관 ■개소의 특정목적사업 적립금 ▲건에 대해 적립 시작일부터 감사일(2025. 11. 6., 이하 생략) 현재까지 사용계획 사전보고, 예산편성, 결산반영, 특별회계 관리 등을 점검하지 않는 등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별지의 [별표 2] “노인복지시설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보험형 상품 가입 내역” 과 같이 □□ 등 ■개소는 ▲건의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저축 상품이 아닌 원

7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20년)에 따라 '20년부터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지침 개정 전에 '보험상품'으로 기 운용한 경우에는 환경개선준비금 등의 사유 발생 시 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으로 적립된 적립금을 사용하여야 함

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종신행보험 등에 시설명이 아닌 센터장 또는 시설장 개인 명의로 가입하여 적립하였고 2025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보험상품을 중도 해약하여 ◇◇천 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되었다.

또한 별지의 [별표 3] “□□ 특정목적사업의 예산편성 내역” 과 같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세출예산서와 결산서, 보험납입액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2021년부터 적립한 운영충당적립금 ◇◇천 원을 20××. ××. ××. 해약하면서 발생한 해약금 ◇◇천 원을 결산내역 등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도 적립금 중 ◇◇천 원을 2023년도 일반회계 전년도 이월금으로 처리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동두천시에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금액을 센터 예금통장에 20××. ××. ××.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는 등 특정목적사업의 예산관리 및 운영이 투명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감사일 기준(2025년 10월) 현재 보험 상품 중도 해지로 ◇◇천 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고 예산 관리가 투명하게 운용되지 않는 등 특정목적사업 적립금의 본래 목적인 기관의 안정적 운영 취지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특정목적사업 예산집행 및 관리 소홀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장기요양기관 예·결산 보고 시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이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적립 취지에 맞게 운용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8조 및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적립하고 있는 ㄱ센터 등 ▲개 시설에 대해 적립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지]

[별표 1] 노인복지시설 특정목적사업 예산운용 및 지도·점검 미이행 내역 “생략”

[별표 2] 노인복지시설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보험형 상품 가입내역 “생략”

[별표 3] ㄱ보호센터 특정목적사업의 예산편성 내역 “생략”

일련번호	3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다과, 라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 지도·감독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다과, 라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 다과, 라과(이하 “가과 등 3개 부서” 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처리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 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7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이하 “비지정후원금” 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V.-6.-나, “후원금의 관리” 에 따르면 비지정후

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⁷⁹⁾(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반환금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이월·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등 3개 부서는 사회복지시설이 비지정후원금을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에 따라 후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 3개 부서는 [표 1]과 같이 □□ 등 ■개 시설이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를 50% 초과하여 사용하였고, [표 2]와 같이 ○○ 등 ■개 시설에서는 간접비 중 사용이 금지된 잡지출, 예비비, 직책보조비, 기관 운영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하였으며, [표 3]과 같이 △△ 등 ■개 시설은 후원금 전출금·전입금 예산편성 시 세입이나 세출에 후원금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과 명확성 확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비율(50%) 초과 집행내역 “생략”

[표 2]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간접비) 부적정 사용내역 “생략”

[표 3] 2025년 비지정후원금 전출·전입금 부적정 예산편성 내역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 등 3개 부서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후원금 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시설의 후원금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 시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9)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당해연도 비지정후원금 지출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가 투명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사회복지시설 비지정후원금을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3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다과 (나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미 실시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다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과)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 다과(이하 “가과 등 2개 부서” 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노인복지법」 제42조, 「장애인복지법」 제61조, 「아동복지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등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 업무를 처리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 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7부터 제1호의 9까지 해당되는 사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II.-2.-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에 따르면 시설장 및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유형별 시설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거나 취업자등으로부터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받아야 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거나 취업자등으로부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받아야 하고, 관할행정기관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 및 제2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자등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거나

취업자등으로부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받아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등 2개 부서는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취업자등에 대하여 결격사유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채용하는지 관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취업자등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 2개 부서는 [표]와 같이 ■개 사회복지시설에서 ▲명의 종사자 등을 채용하면서 결격사유나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하지 않았고, ■개 시설에서는 ▲명의 종사자 등을 채용하고도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4년 이상까지 조회를 지연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 사회복지시설 범죄경력 등 미조회 및 지연조회 내역 “생략”

그 결과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이용자의 안전 보장과 종사자 등의 신뢰성 확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 등 2개 부서는 담당 시설의 관리 소홀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시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및 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범죄경력 조회 등을 실시하지 않은 ■개소 ▲명에 대한 결격 사유 및 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등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지]

[별표] 사회복지시설 범죄경력 등 미조회 및 지연조회 내역 “생략”

일련번호	3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승강기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대상 과태료 부과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 이라 한다)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변경(이하 “선임 등” 이라 한다) 통보, 관리 교육, 보험 가입 등의 승강기 안전관리 의무를 미이행한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등 통보기한 미준수 대상 과태료 미부과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승강기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⁸⁰⁾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같다고 되어 있다.

80)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의 통보기한은 2024. 1. 30. 개정, 2025. 1. 31. 시행되었으며, 부칙(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제4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 사실의 통보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3개월)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그리고 같은 법 제78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의 통보 접수 권한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고, 공단은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별표 13]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표 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	과태료 금액
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만 원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50만 원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자료: 승강기법 과태료 부과기준 재구성

따라서 가과는 승강기법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경기도와 공단으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현황’ 과 ‘국가승강기정보센터⁸¹⁾’ 활용 방법을 주기적으로 통보받아 이를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통보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표 2]와 같이 감사일 현재(2025. 11. 6.)까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통보하지 않은 ○○○○ 등 ○개소의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총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표 2]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등 통보기한 위반 현황 “생략”

81) 승강기관리 중 ‘안전관리자 미선임 현황’ 조희를 통해 안전관리자 해임일자 등 현황 확인이 가능

3. 승강기 관리교육 미이수 대상 과태료 미부과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승강기법 제29조 제5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승강기관리교육은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하여 해당 승강기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⁸²⁾과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직전의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승강기법 제8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별표 13]에서는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경우 [표 3]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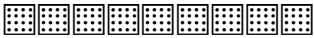
[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29조 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자료: 승강기법 과태료 부과기준 재구성

따라서 가과는 승강기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4]와 같이  등 ○개소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감사일 현재(2025. 11. 6.)까지 과태료 총 250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82) 승강기를 관리하던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도 포함

[표 4] 승강기 관리교육 미이수 현황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동두천시 관내 총 1,547대의 승강기 안전관리 및 행정처분 업무를 1명의 담당자가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고 승강기 관리주체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도 다수 있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향후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승강기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통보하지 않은 승강기 관리주체와 승강기 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3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 (다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다과)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 나과(이하 “가과 등 2개 부서” 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⁸³⁾ 운영규정」에 따라 제3종시설물⁸⁴⁾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설계도서 제출 등 공공관리주체로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처리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시설물안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83) 시설물안전법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운영중인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84)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시설물로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제1종 및 제2종시설물 제외)

같은 법 제9조 제2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이하 “설계도서 등”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관련 서류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과 등 2개 부서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 등을 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 2개 부서는 [표]와 같이 ○○○○ 등 ●개소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2025. 11. 6.)까지 설계도서 등을 시설물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제출하지 않았다.

[표] 설계도서 등 미제출 대상 현황 “생략”

그 결과 설계도서 등의 검토를 통한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 확인과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한 이후 시설물통합관리체계를 통해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시스템의 숙지 미흡으로 설계도서 등이 최종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국토안전관리원⁸⁵⁾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에 20▽▽. ▽▽. ▽▽. 설계도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과는 제3종시설물 설계도서 등 미제출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하

85)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을 운영

반기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의 설계변경과 더불어 ■■■■■ 등 ○개소에 대한 설계도서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및 설계도서 제출 등 공공관리주체로서의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35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 다과, 라과 (마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사업장 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 다과, 라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마과)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 나과, 다과, 라과(이하 “가과 등 4개 부서” 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사업장 관리책임자 미통보 대상 관리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라과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관리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사실을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라과는 [표 1]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동 △♀♀♀♀번지 일원 ●●●●●●●●●●●●●●” 사업장의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통보하지 않았는데도, 감사일 현재(2025. 11. 6., 이하생략)까지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업장 관리책임자 미통보 대상 현황 “생략”

3. 재해영향평가등 교육 미이수 대상 관리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4항에 따르면 관리책임자는 지정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⁸⁶⁾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I.-3.3.3-다-4)에 따르면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에 관한 사항은 [표 2]와 같다고 되어 있다.

86) 2024. 7. 31.부터 시행, 이 규칙 시행 전에 관리책임자로 지정되거나 변경된 사람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함.

[표 2]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에 관한 사항 “생략”

따라서 가과 등 4개 부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관리책임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 4개 부서는 [별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업장 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 현황” 과 같이 “♣♣ ♣♣♣♣ ♣♣” 사업장 등 ◎◎개소의 관리책임자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2024. 7. 31.) 이후 ◇◇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이수 독려 및 이행점검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사업장 관리책임자 미통보 대상 관리 소홀 관련

라과는 “□□동 △♣♣♣♣번지 일원 ●●●●●●●● ●●” 사업이 최초 허가(20◇◇. ◇◇. ◇◇., 허가번호 제20◇◇-◇◇호)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득한 사업으로 허가 당시에는 관리책임자 지정·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사업 변경에 따른 소규모 재해영향성평가의 협의(20◇◇. ◇. ◇◇.)가 완료된 후 개발행위(변경)허가(20◇◇. ◇. ◇◇.)를 하면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오인하여 관리책임자 지정·통보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수허가자에게 통보하여 관리책임자 지정 등에 관하여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재해영향평가등 교육 미이수 대상 관리 소홀 관련

가과는 공장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의 의제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법 조건사항에 대한 내용을 간과하여 행정적 누락이 발생되었음을 인정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에 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과, 라과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의 연찬을 통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으

며,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과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 책임자 지정·통보 및 재해영향평가등 교육 이수 등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동 △☁☁☁번지 일원 ●●●●●●●● ●●” 사업장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통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동 ☁☁☁-☁번지 일원 ▲▲▲▲ ▲▲” 등 ◆◆개 사업장의 관리책임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지]

[별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사업장 관리책임자 교육 미이수 현황 “생략”

일련번호	36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 다과 (라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민방위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 다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라과)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 나과, 다과는 「민방위기본법」, 「민방위 업무지침」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 강사 위촉 및 민방위대 편성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2. 민방위 교육 강사 위촉 미실시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민방위 대원이 소속된 민방위대의 대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민방위 담당 공무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2025년 민방위 업무지침」 2.-Ⅳ.-7.-㉓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 강사는 지자체별 특정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강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면접, 시범 강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단년(1년) 단위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21년 및 2023년도 「민방위 업무지침」 2.-Ⅳ.-7.-(7)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방위 집합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민방위 교육 강사를 신규로 선발하거나, 또는 전년도에 선발된 민방위 교육 강사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당해 년도 민방위 교육 강사로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과는 「민방위기본법」 및 「2023년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동두천시 특정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강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민방위 교육 강사를 신규 선발하거나, 또는 전년도에 선발된 민방위 교육 강사의 본인 동의를 받아 당해 년도 민방위 교육 강사로 재위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0◇◇년도에는 강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아 민방위 교육 강사를 신규로 선발하지 않았으며, 전년도에 선발된 강사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해 연도에 재위촉을 하지 않았다.

[표 1] 민방위 교육 강사 위촉 현황 “생략”

그 결과 교육 강사 공백으로 인한 민방위 교육 운영의 안정성 저해를 초래하였다.

3.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시 읍·면·동협의회 심의 미실시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민방위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면·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8호에 따르면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심신 장애인, 만성 허약자는 민방위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와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는 읍·면·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7조 제4항에서는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⁸⁷⁾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읍·면·동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협의회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에서의 제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편성 제외 심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본인과 해당 민방위 대장에게 그 결정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나과, 다과는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 여부 판단 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읍·면·동협의회 심사를 거쳐 그 결정 사항을 본인과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또한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재심의 대상자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을 준수하여 민방위대 편성·제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나과, 다과는 [표 2]와 같이 20◇◇년과 20▲▲년에 각 ◇◇명씩을 읍·면·동협의회 심의 없이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해야 하는 재심의 및 확인 절차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표 2] 민방위대 제외자 읍·면·동협의회 심의 미실시 현황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 강사를 위촉했어야 하나, 코로나 19 상황으로 관련 절차를 일부 소홀하였음을 확인하며, 향후 변경된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홀함 없이 매년 민방위 집합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과, 다과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만성허약자를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시켰어야 하나, 그 조치가 소홀하였

87)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음을 확인하며 차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민방위기본법」, 「민방위 업무지침」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 강사 위촉 및 읍·면·동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37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0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지구 용도지역 변경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표 1]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 현황 “생략”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국토계획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제52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이하 “도 위임 조례”라 한다) 제9조 제2항 및 [별표 2]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표 2]와 같이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이 수반되는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용도지역 변경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무 위임 현황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다음 사무	
·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이 수반되는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용도지역변경(결정 또는 변경결정 후 5년 이내에 연접하여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할 경우에는 그 합한 면적 및 규모를 적용한다)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제36조

자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재구성

따라서 가과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이 수반되는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부지면적이 3만㎡ 이상이라면 국토계획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6조와 도 위임 조례 제9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경기도에 신청하여 결정받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1]과 같이 201○. 10. ○○. ××건설(주)로부터 □□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받은 후 201○. 12. ○. ××건설(주)에 제안 수용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201○. 12. ○○. □□지구(총면적: 3○,○○○㎡)의 용도지역을 변경[변경면

적: 20,000㎡, 용도: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그런데 □□지구의 부지면적은 30,000㎡이므로 □□지구의 용도지역 변경은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가과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하여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결정받지 않은 채 이를 자체적으로 결정·고시하는 권한 없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2020. 2. 00. 가과는 경기도 나과를 방문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된 도 위임 조례의 해석을 요청하였고, 이때 부지면적 3만㎡ 이상인 □□지구의 용도지역 변경은 경기도 결정 사항이므로 □□지구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2010. 12. 00.)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알게 되었는데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동주택 건설사업자 및 입주자에게 도시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도 위임 조례 [별표 2] 중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위임 사무 규정을 오해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항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지구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위법하게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여야 하나, 「지방공무원법」 제73의2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의 시효가 도과되어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38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0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 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민간사업자가 동두천시 ××동 산×××-×번지 일원에 계획한 사회복지시설(이하 “××동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표 1] ××동 사회복지시설의 실시계획 인가 현황 “생략”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국토계획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

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88조 제1항 및 제2항, 제5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무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표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무 위임 현황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또는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의 승인·고시(부지면적 3만㎡ 미만의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사무[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사항은 제외하며,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각각 결정 또는 변경결정해야 하는 경우(중복결정 또는 타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사회복지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제43조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무	
· 실시계획의 인가(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서류의 열람 및 실시계획의 고시(방법),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88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00조

자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재구성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한다) 제107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

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사회복지시설이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야 하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도 인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동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적정

가과는 □□개발(주)가 201○. ○. ○○. 제안한 ××동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에 한하고, 주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는데, ××동 사회복지시설은 □□개발(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항으로 인구 밀집지역과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 적정’ 하다면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201○. ○. ○○. 시장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동두천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 ○○. ○○. ××동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였다).

그런데 가과가 ××동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두천시 ○○○○위원회 심의를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관련 예상 질의’ 중 사회복지시설 운영 계획에는 해당 시설이 노인요양시설이고 □□개발(주)가 직접 운영하되 입소자에게 사용료(보증금 0,000만 원, 월세 00~000만 원)를 받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바, 가과는 ××동 사회복지시설을 □□개발(주)가 직접 운영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입소자에게 입소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등의 임대 방식으로 운영됨을 인지하였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었는데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동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다.

나. 도시계획시설인 ××동 사회복지시설의 실시계획 인가 부적정

□□개발(주)는 201○. ○○. ○○. 도시계획시설인 ××동 사회복지시설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기 위해 신청서,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실

시계획 서류를 가과에 제출하였는데,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살펴보면,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 000억 원은 PF대출을 받아 확보하고, 대출금액은 ××동 사회복지시설의 분양수입금으로 상환하되, 주거 및 판매시설이 목표 분양률에 미달할 경우 할인분양을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한다’고 계획되어 있어 가과는 □□개발(주)가 제출한 실시계획이 201○. ○○. ○○.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운영계획과 다르게 분양 목적의 영리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가과는 실시계획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7조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202○. ○○. ○. 위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다. 소결

그 결과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7조의 개정 이유와 다르게 개발행위허가 등을 통해 건립이 가능한 영리 목적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편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① ××동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적정에 대해, 관련자는 금회 종합감사 및 국토교통부 관원질의 회신 결과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였고, 향후 법령 검토 및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개발(주)가 제안할 당시 ××동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제안하였고, 해당 시설이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해 있어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가능하며, □□개발(주)가 토지동의를 100% 확보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해당 사업이 가능한 점, □□개발(주)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수용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

여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문건에 시설이 입소자에게 보증금과 사용료를 징수하여 영리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되어 있어 ××동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7조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가과는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아니 되었다.

또한 가과는 □□개발(주)가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계획하였고, 대상 토지의 소유자 동의를 받은 점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위 검토내용을 토대로 □□개발(주)에게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개발행위를 통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했고,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데도 ××동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개발(주)에게 개발부담금의 면제, 토지 수용권 부여 등 불합리한 편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도시계획시설인 ××동 사회복지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부적정에 대해, 관련자는 ××동 사회복지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7조에 부합하는 시설로 판단하였고, 이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계획은 시기를 달리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과는 2020. 00. 0. ××동 사회복지시설의 실시계획을 검토하면서 2010. 00. 00.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될 당시의 사업계획, 내부 검토문서, 관계기관 협의 의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조건 등과 비교하고, 해당 시점에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개발(주)가 제출한 ××동 사회복지시설사업의 실시계획 관련 서류를 보면, 총 사업비 000억 원 중 약 000억 원은 주거시설 및 판매시설을 타인에게 분양하여 발생하는 분양수입금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가과는 □□개발(주)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당시 직접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

획과 다르고, ××동 사회복지시설을 분양 등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개발(주)에게 이를 수정·보완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동 사회복지시설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7조에 부합하는 시설로 판단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여야 하나, 「지방공무원법」 제73의2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의 시효가 도과되어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39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00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 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 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가능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1만㎡ 미만인 토지 형질변경의 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3-1-1.-(1)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고, 개발행위 시기와 관계없이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존 대지의 면적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 해설」(국토교통부, 이하 “법령 해설”이라 한다) 제 4장-제1절-1.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산정을 하는 경우 동일인이 서로 접한 필지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시차를 두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에는 사업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고, 동일인이 서로 접한 토지에 여러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필지가 다른 경우라도 이는 하나의 개발행위 사업으로 보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규모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며, 여러 필지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다른 경우 각각의 신청 건에 대하여 개발행위 면적을 산정하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하나의 개발행위인데 법령상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 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해 토지의 소유·사용 관계, 개발 목적, 인접 토지의 개발행위, 개발행위 목적 시설의 운영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된 개발행위의 규모가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가 가능한 경우인지를 판단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표 1]과 같이 ××동 일원의 토지소유자 A(이하 “주 토지소유자”라 한다) 등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여러 필지의 토지에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신청한 개발행위 건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허가하였다.

[표 1] ××동 일원 개발행위(토지 형질 변경)허가 현황 “생략”

가. 서로 연접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부적정(1차)

[표 1] 중 연번 1 토지의 주 토지소유자 외 4인은 200○. ○○. ○○. 가과로부터

목조주택단지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0○. ○. ○. 준공하였고, 이후 주 토지소유자가 202○. ○○. ○○. 연번 1 토지(××동 000-0)에 연접한 연번 2 토지에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한다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가과는 202○. ○. ○○.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연번 1 토지와 연번 2 토지는 서로 연접해 있고, 주 토지소유자와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이 동일인이며, 개발행위의 목적도 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조성으로써, 개발행위 시기와 관계없이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시차를 두고 동일인이 서로 접한 필지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표 2]와 같이 연번 1과 연번 2의 개발행위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규모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때 자연녹지지역인 연번 1 토지와 연번 2 토지의 합산 규모가 1만㎡ 미만 규모의 개발행위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표 2] 서로 연접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예시도 “생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과는 연번 2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연번 1과 연번 2의 개발행위는 하나의 개발행위로서 그 규모는 전체 10,956㎡에 이르러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허가될 수 없는 규모였는데도 연번 2의 개발행위를 그대로 허가하였다.

나. 서로 연접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부적정(2차)

주 토지소유자가 202○. ○. ○. [표 1]의 연번 3, 연번 4 토지 전체(이하 “합산 신청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4,861㎡ 규모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가과는 합산 신청지의 개발행위(4,861㎡)를 연번 2의 개발행위(1,501㎡)와 하나의 개발행위(6,357㎡)로 보아 202○. ○. ○○. 동두천시 ○○○○위원회에 안전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였는데 심의 결과는 재심의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주 토지소유자는 202○. ○. ○○. 합산 신청지의 허가 신청을 취하한 후 202○. ○. ○○. 합산 신청지 중 연번 3 토지에만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재차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연번 1, 연번 2, 연번 3의 토지가 모두 연접해 있고, 주 토지소유자 및 신청인이 동일하며, 동일한 개발행위 목적으로 시차를 두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연번 2와 연번 3의 개발행위만이 아니라 연번 1, 연번 2, 연번 3의 개발행위 전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야 하고, 그 개발행위 규모는 14,356㎡에 이르러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허가될 수 없는 규모였는데도 가과는 202○. ○. ○○. 연번 3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

다. 서로 연접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부적정(3차)

[표 1] 중 연번 4 개발행위의 수허가자 B(이하 “연번 4 수허가자”라 한다)는 202○. ○○. ○○. 연번 4 토지에 규모 1,461㎡로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주 토지소유자 외 1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가과는 202○. ○. ○.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연번 4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토지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보면, 연번 4 수허가자가 주 토지소유자(연번 1 내지 연번 3 개발행위 수허가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연번 4 수허가자는 주 토지소유자와 매우 가까운 이해관계인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위 가항, 나항과 같이 주 토지소유자가 서로 연접해 있는 연번 1 내지 연번 3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바 있고 그 과정 중에 202○. ○. ○. 합산 신청지(연번 3 토지와 연번 4 토지)를 하나의 개발행위 대상지로 계획하여 가과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던 사실이 있음을 함께 고려할 때, 연번 4의 개발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 규모 제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존 3건의 개발행위와 명의를 달리하여 신청된 하나의 개발행위인 경우이므로 연번 1 내지 연번 4 토지 전체를 하나의 개발행위 면적(15,817㎡)으로 산정하여 판단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가과는 개발행위 규모가 전체 15,817㎡에 이르러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허가할 수 없는 규모인 연번 4의 개발행위를 아무런 검토 없이 허가하였다.

라. 소결

위 가항, 나항, 다항의 결과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한을 초과한 개발행위가 허가됨으로써 편법을 이용한 쪼개기 개발이 용인되는 등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연번 1의 개발행위가 준공(200○. ○. ○.)되어 장기간 경과하였으므로, 준공된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와 연접한 개발행위의 허가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연번 2 내지 연번 4의 개발행위가 하나의 사업 또는 기존 대지의 확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만㎡ 미만으로 개발하도록 행위의 규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 해설 제4장-제1절-1.-다, -라, -마 에 따르면 동일인이 시차를 두어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준공된 필지와 접한 다른 필지에 동일한 용도의 사업을 위해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가과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관원 질의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서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1-1(1)에서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시기에 관계 없이 그 기존 대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규모를 산정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단의 사업부지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미만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필지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위의 규모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과 관련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3항 가, 나' 와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아래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여야 하나 「지방공무원법」 제73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

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3항 가, 나, 다’ 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여 신청한 규모 초과 개발행위를 허가한 사항은 202○. ○○. ○○. 허가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앞으로 서로 연접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40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표 1]과 같이 동두천시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하였다.

[표 1] 2035년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현황 “생략”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표 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무 위임 현황 “생략”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470호, 2021. 12. 30. 시행, 이하 “기본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 제4장-제7절-4-7-5.에 따르면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을 예측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수립지침 [별첨 2] 도시기본구상도 작성기준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표시범위는 도시·군관리계획상 시설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기본계획 내용의 중요도에 기준을 두어 기반시설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도시공원,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원지, 운동장, 대학,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 철도 등 주요시설을 도시기본구상도에 표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수립지침 제4장-제7절-4-7-5.에 따라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량을 예측하고 처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발생 폐기물의 성상 및 용량과 이미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와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기반시설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도시기본구상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업무 소홀

가과는 2020. 00. 0. ‘2035년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면서 기본계획수립지침 제4장-제7절-4-7-5.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 분석과 수요 예측을 토대로 목표연도 인구 및 공간구조 계획에 맞게 폐기물처리시설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거나 도시기본구상도에 표시하여야 하는데,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관리해 오던 [표 3] 중 폐기물처리시설 1과 폐기물처리시설 3은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면서 폐기물처리시설 2

와 폐기물처리시설 4는 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구상도에 누락하고 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시설의 현황을 분석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2035년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미반영한 주요시설 현황 “생략”

나.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업무 소홀

가과는 2020. 00. 0. [표 3]과 같이 ×××동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 5(8,372 m²)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2020. 00. 0. 결정·고시하였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면 계획의 위계에 맞게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가과는 폐기물처리시설 5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간 정합성 및 연계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업무가 소홀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가과는 기본계획수립지침 [별첨 2] 도시기본구상도 작성기준에 따라 2035년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주요시설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지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기존의 폐기물처리시설도 중요도를 고려하여 4개소 중 2개소만 도시기본구상도에 표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본계획수립지침 [별첨 2] 도시기본구상도 작성기준 마. 및 사.에 따르면 시설의 표시범위는 기본계획 내용의 중요도에 기준을 두어 기반시설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주요시설만 표시한다고 되어 있고, 도시기본구상도의 표시기준으로 도시공원,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원지, 운동장, 대학,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 철도, 기타시설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은 위 지침에 따라 도시기본구상도에 표시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근간이 되는 주요시설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주요시설로 검토하지 않아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가과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업무가 소홀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가과는 폐기물처리시설 5의 입안 및 결정 검토 당시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수립지침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어 기본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5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5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및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이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서 현행 법령 및 규정이 아니라 장래의 법령 개정사항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는 가과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두천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체계적인 공간계획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41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 (다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건설공사의 특허공법 선정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다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 나과(이하 “가과 등” 이라 한다)는 [표]와 같이 “□□도로 1구간 (××교~××교) 보수보강공사” 등 ○건의 건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하면서 설계에 특허로 등록된 특정 공법을 반영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7호, 2022. 7. 1. 시행) 제4장-제3절-2.-다.-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에 따르면 사업(발주)부서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별표2]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이하 “특허공법 선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공법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5장-제3절-3.-가. 대상공사에 따르면 특허공법·신기술·새로운 전력 기술 공사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절-2.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이고, 같은 기준 제2절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법선정 안내 공고, 제안서의 제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공법선정자 통보 등 일련의 공법선정 절차를 거쳐 공법선정자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등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려는 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특허공법 선정기준 제2절에 따라 해당 공사와 관련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라 한다)는 “◆◆소하천(2구간) 정비사업”에 대해 2020. 00. 00.부터 용역을 통해 실시설계를 진행하였고, 2020. 0. 00. 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동두천시 공무원 3인과 외부 위원 2명으로 구성된 ‘특허공법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교량거더에 적용할 특허 공법(제■호)을 선정하였다.

그런데, 가과는 [표 1]과 같이 위 사업에 적용할 교량거더의 특허공법 추정금액이 213백만 원이라면, 특허공법 선정기준 제2절에 따라 공법선정 안내 공고를 통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공법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선정하는 등 일련의 공법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공법선정 안내 공

고 없이 가과가 임의로 구성된 ‘특허공법 선정위원회’에서 설계용역사가 제출한 특정공법 기술검토 의견서에 대해 논의하고 특허 공법(제■호)을 선정하는 등 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른 특허공법 선정절차 없이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1] 특허공법 적용 건설공사 현황 “생략”

그리고 동두천시 나과(이하 “나과”라 한다)는 “□□도로 1구간(××교~××교) 보수보강공사”에 대해 202○. ○. ○○.부터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표 1]과 같이 000공법, 개질아스콘, 방수아스콘(이하 “000공법 등”이라 한다)의 특정 특허 공법을 202○. ○. ○○.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였다.

그런데, 나과는 위 사업에 적용할 000공법 등의 추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특허공법 선정기준 제2절에 따라 일련의 공법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법선정 안내 공고,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등 공정한 공법선정 절차 없이 임의로 특허 공법을 선정하는 등 특허공법 선정기준을 위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 나과는 감사 지적사항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적법한 절차와 세심한 검토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가과는 “■■소하천(2구간) 정비사업”의 교량거더 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동두천시 내부 공무원 4인과 외부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사가 우선 선정한 특허공법 4종에 대해 심의를 통해 공사의 설계에 반영할 특허공법을 선정하였던 점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할 특허공법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42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 다과 (라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 ·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설계 변경 시 물가 변동분 미조정으로 인한 도급금액 과다지급 등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 다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라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 나과, 다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소하천(1구간) 정비사업” 등 ○개 건설공사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하였다.

2. 설계 변경 시 물가 변동분 미조정으로 인한 도급금액 과다지급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지방계약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출된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계약담

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제7절-1.-가.-1)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설계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이하 “가과 등” 이라 한다)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해 물가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같은 영 제74조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이 감소하였다면, [표 1]의 예시와 같이 해당 공정에 대해 공사량 감소 등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뿐만 아니라 앞서 물가 변동으로 인해 증액한 계약금액도 감소된 공사량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표 1] 물가변동분에 대한 조정 예시 “생략”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은 [표 2]와 같이 “■■■소하천(1구간) 정비사업” 등 ○개 사업에 대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을 검토하여 3차 또는 4차에 걸쳐 물가 변동분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였고, 같은 영 제74조에 따라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량의 증감내역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

[표 2] 설계 변경 시 물가 변동분 미조정에 따른 과다지급액 산출내역 “생략”

그런데 가과 등은 기존의 계약내역보다 공사할 수량이 감소하는 설계를 변경하면서 [표 2]와 같이 이미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증액한 계약금액 중 설계수량이 감소하는 항목에 반영된 물가 변동 금액을 감소 수량에 맞게 감액하지 않았고, 공사 준

공 시까지도 감액하여야 할 위 물가 변동 금액을 설계 변경을 통해 조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약 33백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물가 변동분에 반영된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검토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이 경우 그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 다과(이하 “가과 등”이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 등보다 건설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 등이 적은 경우 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사업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보험료 등의 금액을 정산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다과 등은 “△△△△△ 편의시설 조성사업” 등 ○개 공사에 대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물가 변동의 사유가 발생하자 지방계약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는데, 물가 변동에 의해 조정된 계약금액에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이외에 공사에 수반되는 제경비(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다과 등은 [표 3]과 같이 물가 변동으로 인해 증액된 제경비 중, 준공 당시 건설사업자가 사용하지 않은 제경비에 대한 정산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물가 변동에 따라 반영한 보험료 등 제경비 미정산 내역 “생략”

그 결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보험료 등 제경비 약 30백만 원이 정산 검토 없이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관련자는 감사결과 검토사항의 사실관계나 관계 법령 적용 등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과다 지급된 금액은 건설사업자로부터 환수 조치 하겠으며, 향후 설계 변경 시 물가 변동 반영내역을 항목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감소 또는 미시공 수량에 대한 물가 변동분 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법령 및 공사내역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 소하천(1구간) 정비사업’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가 변동 금액을 재산출하고 준공 전 설계 변경을 통해 정산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 및 제경비 정산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 변경 시 물가 변동분을 조정하고 준공 시 보험료 등의 정산 검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건설사업자에게 도급금액을 과다하게 지급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도급계약 금액을 재산정하는 등 도급금액을 특정하고, 건설사업자에게 과다 지급한 금액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43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 다과, 라과, 마과, 바과, 사과, 아과 (자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승인 및 관리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 다과, 라과, 마과, 바과, 사과, 아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자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 나과, 다과, 라과, 마과, 바과, 사과, 아과(이하 “가과 등” 이라 한다)는 별지의 [별표]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사업 및 이행 현황” 과 같이 “○○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등 26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품질시험 관련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검토·승인 업무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건설사업자 등” 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라고 되어 있고,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이 시험계획, 시험시설,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계획 등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 등은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미리 공사감독자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의 경우 승인서(조건부 적정 판정 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 기재)를 발급해야 하고 부적정 판정의 경우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건설공사 수행지침”이라 한다) 제60조, 제90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품질시험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등은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착공 전 품질시험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고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확인 후 승인하여 적정한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공사의 품질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은 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별지의 [별표]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사업 및

이행 현황” 중 ○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 등에게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착공하게 하였다.

또한 가과 등은 건설사업자 등이 제출한 ○○건의 품질시험계획에 대해 [표 1]과 같이 품질시험 대상 품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시험실 면적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 배치가 적정한지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품질시험계획에 누락된 시험계획, 시험시설, 품질관리자 등에 대하여 보완 지시 등을 하지 않은 채 ○○건의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의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않았고, ○건에 대하여는 보완 지시 없이 승인 통보하였다.

[표 1] 품질시험계획 주요 검토사항

구분	세부항목	검토사항	관련 규정
시험계획	공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법령 및 공사시방서 상의 재료 품질기준이 명시된 품질시험 대상 품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 [별표 2]
	시험종목		
	시험계획 물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시험 횟수는 규정된 시험빈도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 등 	
	시험빈도		
	계획시험 횟수		
시험시설	장비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실 면적이 해당 법령에 따라 반영되었는지 확인 시험실 위치의 적합성 확인 시험 장비는 시방기준 등에 적합하게 확보되었는지 확인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
	시험실규모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관리자의 법적 자격요건과 선임내용 확인 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의 담당업무 확인 및 품질관리자의 소속, 재직 여부 등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

자료: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 재구성

그 결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적합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의 품질을 높이려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저해하였다.

3.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관리 부적정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 등은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및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

설기술인 배치기준”은 [표 2]와 같이 시험 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구 분	공사 규모 (금액, 면적)	시험 장비	시험실 면적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0억 원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검사장비	50㎡ 이상	특급 1명, 중급 1명, 초급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500~1000억 원, 연면적 3만~5만㎡		50㎡ 이상	고급 1명, 중급 1명, 초급 1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100~500억 원, 연면적 5천~3만㎡		18㎡~20㎡ 이상 ¹⁾	중급 1명, 초급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2~100억 원		18㎡~20㎡ 이상	초급 1명 이상

주: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 2024. 7. 10. 일부 개정되어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중 시험실의 규모 기준을 20㎡이상에서 18㎡이상으로 완화

자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재구성

그리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및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수행지침 제60조, 제90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품질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 등은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공사 규모 등에 적합한 품질관리자를 배치하도록 건설공사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 등은 별지의 [별표]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사업 및 이행 현황” 과 같이 ○○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사업자 등이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및 시험 장비를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건의 건설공사는 품질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았거나, 현장대리인을 겸임하여 배치하였는데도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는 등 품질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전문 인력이 품질시험 등을 통해 설계도서에 부합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관련자는 관련 법령 및 업무 지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품질시험계획의 검토·승인 및 관리 업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일부 준공되지 않은 건설공사는 품질시험을 위한 시험실과 장비 구비 후 현장에서 품질시험이 이루어지게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승인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의 관련자를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앞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검토·승인 및 품질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시험실의 규모·시험 장비 또는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를 부적정하게

한 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에 따라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별점 부과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지] [별표]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사업 및 이행 현황 “생략”

일련번호	44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 (다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 등 통보 의무 위반 업체 과태료 미부과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다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 나과는 “○○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등 2건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서 도급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

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두천시 가과, 나과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을 통보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동두천시 가과는 [표 1]과 같이 ‘○○지구 ○○○ 조성사업’에 대해 건설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최대 128일이 지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는데, 같은 법 제99조 제4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표 1] 직접시공계획 통보 의무 위반 건설사업자 “생략”

그리고 동두천시 나과는 [표 2]와 같이 ‘○○동 ○○○○센터 신축공사(건축)’에 대해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하고, 그 계약한 날로부터 최대 74일이 지나서 발주청에 하도급계약을 통보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하였는데도, 같은 법 제99조 제5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 위반 건설사업자 “생략”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관련자는 공사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서, 향후 해당 업무 수행 시 법령 연찬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추진 시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45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지방도 점용(굴착)허가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고 한다)는 「도로법」,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의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업무를 하고 있다.

2. 도로 점용(굴착)허가의 관리 및 준공 업무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의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를 마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준공 확인신청서에 설계도면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준공도면을 영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공공측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지하시설물의 측량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공공측량 작업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지하시설물의 조사, 탐사 대상 및 범위

(단위: 천 원)

시설명	수도	하수도	가스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전기설비	송유관	난방열관
폭/관경	50mm 이상	200mm 이상	50mm 이상	50mm 이상	100mm 이상	모든 관경	모든 관경

자료: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2조 재구성

또한 「도로법」 제7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7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지방도를 굴착하여 공작물, 지하매설물을 설치·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 라 한다)에게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한 후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현장을 확인하고, 굴착공사시행자에게 준공확인신청서와 관계도서를 제출하여 준공확인을 받도록 조치하거나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령하여야 하며,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도로점용의 허가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굴착공사 시행자가 신청한 지방도의 점용(굴착)을 허가하면서 허가 조건에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도로를 원상복구한 후 준공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 확인을 받도록 명시하였고, 준공확인 신청 시 설계도면(준공 당시), 공사 전·중·후 사진, 지하 매설물 확인을 위한 측량 결과(사본)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런데 가과는 [별표] 지방도 점용(굴착)허가 후 준공확인 미신청 현황과 같이 지방도의 굴착공사 ○○건에 대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현장을 확인하거나 굴착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굴착공사 ○건은 굴착공사 시행자가 실제로 공사를 시행한 시기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지방도 점용(굴착)허가의 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그리고 가과는 [표 2]와 같이 도로점용(굴착)의 허가만료일로부터 최대 213일이 지나서야 준공 처리하면서 지하시설물의 공공측량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준공도서를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등 준공 업무도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 2] 지방도 점용(굴착)허가 후 준공처리 부적정 현황 “생략”

3. 허가의 공시 및 허가대장의 관리 소홀

가.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굴착공사시행자에게 도로의 점용을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굴착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고, 허가대장에 허가내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2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건의 지방도의 점용(굴착)을 허가하면서 그 허가내용을 한차례도 공고하지 않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아 지방도의 점용(굴착) 허가 건에 대해 원상회복 검사일, 굴착공사 방법, 교통대책, 허가조건 및 이행상황을 알 수 없는 등 도로점용(굴착) 허가 업무를 소홀히 관리·운영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로점용 통합관리대장을 구축하고, 허가 공고 및 허가대장 관리를 정상화하겠으며, 준공확인 및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면서 지하시설물 공공측량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지방도의 도로점용 허가 시 「도로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도로관리청에 준공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도로점용(굴착)공사 ○○건에 대해 허가조건에 따라 공사가 실시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도면 등을 제출받아 보관·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도로점용(굴착) 공사를 완료하고도 도로관리청에 준공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수 허가자에게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도로관리청으로서 지방도 이외의 도로에 대해 점용(굴착) 허가를 전수 조사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지] [별표] 지방도 점용(굴착)허가 후 준공확인 미신청 현황 “생략”

일련번호	46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물환경보전법 과태료 위반 차수 적용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물환경법” 이라 한다)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물환경법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물환경법 제8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제3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 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별표 18]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카.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 제2호	100	200	300

자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8] 발체

따라서 가과는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사실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번 감사에서는 202×. ×. ×.부터 202×. ×. ×.까지 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가과는 [표 2]와 같이 202×. ×. ×. □□기업에 대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그 후 202×. ×. ×.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해당 사업장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적발되어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2차 위반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202×. ×. ×.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⁸⁸⁾하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2차-경고) 및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 를 하였다.

8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10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감경

[표 2] 과태료 부과 부적정 현황 : “생략”

그 결과 해당 사업장은 2차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을 자진 납부기간 내 감경된 과태료 80만 원으로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부과·징수 절차가 완료되어 시정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행정행위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동일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검토 및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폐수배출시설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동두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위반 차수에 적합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47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추징	재정상 조치금액	2,000,00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제 목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미부과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⁸⁹⁾,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최초 교육⁹⁰⁾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⁹¹⁾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사업장별 폐기물 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수수료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번 감사에서는 202×. ×. ×.부터 202×. ×. ×.까지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가과는 한국폐기물협회, 한국환경보전원에서 통보한 202×년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수수료 명단을 확인한 후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미이수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표]와 같이 □□기업 등 ×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총 2,000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미이수 과태료 미부과 현황 : “생략”

그 결과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을 미이수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적시에 부과하지 못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되었다.

89)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 및 과태료 부과 사무 시장·군수에게 위임

90) 최초 교육 : 해당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91)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1차)위반 50만 원, (2차)위반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당면 업무와 민원 처리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폐기물 처리 관련 교육 이수 현황을 관리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미이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48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 업무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 및 가동개시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⁹²⁾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8조 제6항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가동개시신고 또는 시운전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가동개시신고를 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허가(신고)사항과 일치한지 여부 등을 현장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수리한

92)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1,2종 배출시설 및 산업단지 내 설치된 배출시설 등을 제외하고 배출 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후 15일 이내에 현장에 출장하여 허가(신고)사항과 일치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번 감사에서는 202×. ×. ×.부터 202×. ×. ×.까지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 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가과는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가 접수된 ×개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방지지설의 현장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표]와 같이 □□기업 등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이 허가(신고) 사항과 실제 운영 상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확인을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하였다.

[표] 가동개시 신고 사업장 현장 확인 지연 현황 : “생략”

그 결과 가동개시 신고된 배출·방지지설이 허가(신고) 내용대로 적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지연되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가동개시 현장 확인 업무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의 가동개시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적기에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49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관리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이라 한다)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등에 따라 동두천일반 산업단지, 동두천2일반산업단지, 동두천상봉암일반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산업집적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업종 또는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공장의 경우에는 공장건축면적), 공장(사업장) 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52조 제2항 제5호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4호 및 제55조 제2항 제9호에 따르면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인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있다면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했어도 입주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다면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사전감사자료 및 세무자료 등을 통해 동두천시 산업단지 내 지번을 주소로 등록한 모든 사업자를 전수 조사해 본 결과, [별표] “동두천 산업단지 입주계약 미체결 현황” 과 같이 입주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가 총 ■개(개인 ■개, 법인 ■개)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와 같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개 사업자(산업시설구역 ■개, 지원시설구역 ■개)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개 사업자(산업시설구역 ■개, 지원시설구역 ■개)가 입주계약을 미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동두천시 산업단지 입주계약 미체결 현황 요약 “생략”

그 결과 동두천시 산업단지 관리가 허술하고, 산업단지에 실제로 입주한 기업체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가과는 감사기간(사전조사기간 포함) 중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위법을 시정하고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를 전수 방문·조사하였고, 2025. 12. 23. 기준 총 ■개 사업자로부터 입주계약 신청을 받아 ■개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체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개 사업자에 대하여 현재 관계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입주계약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입주계약 미체결 또는 변경계약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계약 체결을 안내·독려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 체계 보완을 통해 입주계약 관련 사항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입주계약을 미체결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정기 실태조사 등 향후 산업단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지]

[별표] 동두천 산업단지 입주계약 미체결 현황 “생략”

일련번호	50	감사자	☆급 ○○○		공 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관 (가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민간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미공시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관)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관(이하 “가관”이라 한다)은 예산총괄부서로서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동두천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민간보조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12조 제3항도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 받은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관은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방보조사업(이하 “민간보조사업”이라 한다)을 통해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중요재산의 현황을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사업부서의 민간보조사업을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지난 ■년간 동두천시에서 추진한 민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 목록 총 ■건(국·도비 지원■건, 자체 재원 ■건)을 전수 조사해 본 결과, [별표] “민간보조사업 중요재산 현황 미공시 내역” 과 같이 총 ■건 모두가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와 같이 나과가 중요재산 목록 ■건을 미공시하는 등 ■개 사업부서에서 ■개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 ■건을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는데도 가관은 사전에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표] 민간보조사업 중요재산 현황 미공시 내역 요약 “생략”

그 결과 민간보조사업 관리가 허술하여 동두천시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자가 취득한 중요재산의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가관은 감사기간 중 해당사실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위법을 시정하고자 민간보조사업 내역을 수차례 전수 조사한 후, 누락된 중요재산 현황 ■건을 모두 동두천시 홈페이지에 공시한 바 있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관은 공시대상 중요재산의 기준을 정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공시를 누락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지난 2023년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보조금으로 지원된 공사, 시설, 단체 운영 및 물품 등에 관하여 공사·운영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반기별로 해당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중요재산 기준 수립 및 공시 이행 의무 등 보조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 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할 계획으로 2026년 1월 민간보조사업자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중요재산 공시 이행 등 향후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 공시 등 민간 보조사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지]

[별표] 민간보조사업 중요재산 현황 미공시 내역 “생략”

일련번호	51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동두천시 가과 (나관)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제 목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 검토 소홀
소관기관(부서) 동두천시 (가과)
조치기관(부서) 동두천시 (나관)
내 용

1. 업무 개요

동두천시 가과(이하 “가과” 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판단 기준(관계 법령 등)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⁹³⁾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⁹⁴⁾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93)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철도·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94)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는 1만㎡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말함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의2호 다목에 따르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하려는 건축물이 공동주택으로서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용도·규모·층수 또는 주택 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의2호 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이고, 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 및 주택호수 10호 이하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과는 주택호수가 10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는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허가 또는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과는 2020. 00. 00. (주)△△△△△ 외 1인(이하 “수허가자” 라 한다)으로부터 도시형생활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 나과 등 관계 부서와 실무종합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를 거쳐 2020. 0. 00. [표 1]과 같이 허가하였다.

[표 1] 00동 000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 현황 “생략”

이후 수허가자는 2020. 00. 00. [표 4]와 같이 당초 도시형생활주택(6개동, 48세대)을 건립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받은 건에 대해 기허가 부지를 1단지와 2단지로

나누어 공동주택(1단지: 4개동 32세대, 2단지: 4개동 32세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변경 허가를 신청하자, 가과는 나과 등 관계 부서 실무종합심의 후 2020. 0. 0. 동두천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게 하였고, 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하기로 결정되었다.

한편 위원회 심의 회의록에는 ① 개발행위 목적을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으로 변경하는 경우 30세대 이상이면 주택건설사업 승인대상임, ② 주택건설사업 승인대상의 경우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계획이 변경됨, ③ 수허가자가 기허가받은 1건의 개발행위를 2건의 개발행위로 나누어 신청한 것이라면 2건을 개별 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건)으로 판단해서 검토해야 하는 등의 심의 의견이 있었다.

그런데 가과는 2020. 0. 0. 수허가자에게 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위의 심의의견 중 ②, ③은 제외하고 ①에 대해서만 명시하여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였고, 2020. 0. 00. 개최한 위원회의 재심의 과정에서 「주택법」에 따른 기반시설, 편의시설 등 전체적인 시설계획 검토와 [표 4]의 1단지와 2단지가 하나의 개발행위 건으로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심의되지 않게 하는 등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하였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 후에 수허가자가 개발행위(변경)허가의 목적을 공동주택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부지 조성으로 변경하였다면, 가과는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수허가자가 제출한 개발행위 목적 변경(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나과 등 관계 부서와의 실무종합심의를 통해 건축계획, 기반시설, 편의시설 등의 계획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였는데도, 관계 부서와 협의없이 해당 건을 위원회에 재상정한 후 2020. 0. 00. 허가하는 등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다.

4. 관련자 주장 및 판단

가과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당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

획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건축부서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의 용도에 대해 구두로 협의하고 재심의 시 참석한 나과가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해서 판단하였다며 향후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과 ○○동 ○○○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건이 이행보증증권 미제출, 허가기간 만료 등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거쳐 202○. ○○. ○. 허가를 취소한 점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동두천시장은

-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시 관계 부서 간 실무종합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도출된 의견을 철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주의)